시 보

선	기관의 장
람	

all ways INCHEON

제1841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수요일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42호 도시계획시설(십정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44호 도시계획시설(갈개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 9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15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 1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18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 1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23호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사업 공모 ····· 2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 3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3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39호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73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53호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74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54호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 8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37호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 11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38호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9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39호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42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41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56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43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69

회 람								

인천광역시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50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8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51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0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52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9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53호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209

기 타

○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0-138호 인천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및 등록 기준 고시 ·· 224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42호

도시계획시설(십정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십정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최초)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대공원사업소(☎ 032-440-5824),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부평구청(공원녹지과 ☎ 032-509-8684)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산5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2) 명 칭 :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1단계)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십정 근린공원	도시 공원	220,582	-	104,893	115,689	1975.05.16. (건고 75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인천대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6(장수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붙임 : 토지조서 1부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비대상 필지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본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의견회시 하지 않은 관계기관과도 협의 완료 후 대상 필지를 사용하여야 함)
7.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교통, 재해, 환경 등)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각종 신고 사항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9.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계				145,582.0	104,893.0							
1	부평구	십정동	185-40	대	5.0	5.0	사회복지법인○○보육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1				
2	부평구	십정동	500-12	잡	409.0	409.0	강○희와김○열의후예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				
3	부평구	십정동	500-18	잡	35.0	35.0	김○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1	주식회사○○2저축은행	중구 중앙대로	가압류	
										○○건설주식회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가압류	
										주식회사○○저축은행	부산 동구 중앙대로	가압류	
										파산자주식회사○○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가압류	
										파산자주식회사○○2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가압류	
										국(북인천세무서)		압류	
										부평구		압류	
4	부평구	십정동	502-8	전	18.0	18.0	김○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				
5	부평구	십정동	502-10	대	153.0	153.0	김○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1	중소○○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근저당권	
										중소○○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지상권	
										김○자	인천 미추홀구 간석동	근저당권	
										김○자	인천 미추홀구 간석동	지상권	
										한국○○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가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파산자주식회사○○	부산 중구 중앙동	가압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파산관재인정○성			
										인천세무서		압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압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압류	
										○○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가압류	
6	부평구	십정동	산37	임	34,680.0	9,502.0	인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75.02/100				
							인천광역시(교육청)		24.98/100				
7	부평구	십정동	산39-3	임	18,792.0	18,792.0	국(기획재정부)		1/1				
8	부평구	십정동	산39-6	임	973.0	973.0	국(기획재정부)		1/1				
9	부평구	십정동	산40-4	임	397.0	397.0	인천광역시		1/1				
10	부평구	십정동	산40-5	임	15,018.0	15,018.0	국(기획재정부)		1/1				
11	부평구	십정동	산41-7	임	298.0	121.0	국(산림청)		1/1				
12	부평구	십정동	산41-8	임	17,572.0	2,285.0	사회복지법인○○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1				
13	부평구	십정동	산41-9	임	923.0	876.0	임○숙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				
14	부평구	십정동	산41-11	임	4,917.0	4,917.0	사회복지법인○○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1/1				
15	부평구	십정동	산41-17	임	3,164.0	3,164.0	국(산림청)		1/1				
16	부평구	십정동	산48-1	임	4,611.0	4,611.0	김○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				
17	부평구	십정동	산48-13	임	3,714.0	3,714.0	김○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1	국(북인천세무서)		압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8	부평구	십정동	산50	임	30,665.0	30,665.0	윤○익	서울 구로구 구로동	1/1				
19	부평구	십정동	산51-8	임	8,712.0	8,712.0	국(산림청)		1/1				
20	부평구	십정동	산52-5	임	4.0	4.0	국(기획재정부)		1/1				
21	부평구	십정동	산53-1	임	407.0	407.0	주식회사○○핀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1	주식회사○○2저축은행	중구 중앙대로	가압류	
										○○건설주식회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가압류	
										주식회사○○저축은행	부산 동구 중앙대로	가압류	
										파산자주식회사○○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가압류	
										파산자주식회사○○2저축은행의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	서울 중구 다동	가압류	
										부평구		압류	
22	부평구	십정동	산53-12	임	115.0	115.0	최○훈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1/5				
							이○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5				
							최○숙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5				
							최○아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				
							장○효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1/5				

인천광역시고시 제2020-144호

도시계획시설(갈개근린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갈개근린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최초)인가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계양구청(공원녹지과 ☎ 032-450-6833),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산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

2) 명 칭 : 갈개(영신)공원 조성사업(2단계)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갈개 근린공원	도시 공원	33,698	7,437	26,261	-	1985.05.16. (건고 219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붙임 : 토지조서 1부

실시계획인가 조건

1.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 규정과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검토하고 관계법에 따른 절차(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등)를 이행한 후 시행한다.
2. 본 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 및 주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 착수 전에『대기환경보전법』및『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관련 사항을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소음 및 날림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하여 방음벽 설치 등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5.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사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귀속 비대상 필지에 대하여 그 재산의 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재산관리기관과 협의 후 사용 또는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본 인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시 의견회시 하지 않은 관계기관과도 협의 완료 후 대상 필지를 사용하여야 함)
7.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영향평가(교통, 재해, 환경 등)에 따른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각종 신고 사항 등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8.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시 제시된 관련기관(부서)의 협의의견은 사업에 반영하여 협의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 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보완 협의 후 사업 시행하여야 한다.
9. 기타 시행과정에서 각종 법령 및 관련 지침을 준수(이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인가권자가 별도로 지시할 수 있다.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계				**29,566**	**26,261**						
1	계양구	작전동	산2	임	27,068	24,208	○○ 종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2	계양구	작전동	757	전	530	530	○○ 종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3	계양구	작전동	758	대	516	516	○○ 종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4	계양구	작전동	759-1	답	668	668	○○ 종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5	계양구	작전동	759-2	전	271	271	○○ 종회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				
6	계양구	작전동	847-1	도	513	68	국 (국토교통부)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15호

과학관 변경등록 공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한 과학관을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등록사항**

기 존	변 경
1. 명 칭 : 인천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	1. 명 칭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
2. 등록번호 : 2010-인천광역시-제2호	2. 등록번호 : 2010-인천광역시-제2호
3. 구 분 : 전문과학관(공립)	3. 구 분 : 전문과학관(공립)
4. 설 립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4. 설 립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5. 대 표 자 : 정 갑 순	5. 대 표 자 : 이 하 용
6.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542	6. 소 재 지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277번길 74-10(운서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18호

압류자동차 공매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매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매대상 재산(자동차) : 02무6349 등 69대 (붙임목록 참조)

2. 공매일정

가. 입찰신청(등록)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20.5.19.(화) ~ 2020.5.26.(화) 14:00

○ 은행 가상계좌 부여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입찰참여 마감 당일은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최소 30분전에는 입찰참여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결과 및 매각결정은 입찰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공매 홈페이지에 게시

나. 입찰참여 마감 : 2020.5.26.(화) 14:00

※ 14:00 이후에 입찰보증금이 입금된 입찰자는 입찰권한을 부여하지 않음.

다. 입찰결과 발표 : 2020.5.27.(수) 14:00

○ 마감 후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http://www.automart.co.kr)에 발표

3. 공매방법

가. 일반 전자상거래에 의한 경쟁 입찰 방식 적용

나. 공매장소 : (주)오토마트 인터넷 공매사이트

4.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배분받을 수 있는 채권

가.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전까지 등기(등록)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채권 (지방세징수법 제81조)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 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나. 배분요구종기일 : 2020.5.26.(화) 18:00

5. 입찰참가 및 등록방법

가. 인터넷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되 입찰등록 시 개인정보 입력 및 비밀번호 부여로 본인만 신청가능하며, 입찰신청 후 [입찰참여]에서 입찰가를 반드시 등록해야만 입찰이 완료됩니다(입찰서와 공매보증금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을 변경하거나 취소 및 반환할 수 없음).

나. 선택 차량에 대한 입찰자격은 다음 계좌에 공매보증금을 매각예정액 10/100 이상을 입금해야 부여됩니다.

※ 주의 : 은행 업무시간외에는 입금이 안 될 수 있으며 은행사정상의 미 입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공매보증금 납부(입금)계좌 : 입찰신청 후 입금계좌번호 자동부여 (입찰신청 후 [공매+입찰자명]으로 은행의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 공매보증금은 입찰신청을 최종 완료한 후 보증금의 총 합계액을 가상계좌로 입금하셔야 정상처리 됩니다.
- 입찰 후 입금하기 전까지는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총 합계액으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을 한 후에 추가 입찰할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추가 발급되므로 이 경우에는 새로 발급된 가상계좌로 추가 입찰한 공매보증금의 합계액으로 입금합니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매각결정일 부터 3일 이내(공휴일이면 익 일)에 환불됩니다.

라.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전환되므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규정에 따른 의무이행 기간「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있음을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 및 낙찰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매각결정 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면 공매와 관련된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는 취소됩니다(제출서류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6. 낙찰자 결정기준

가. 입찰가격이 매각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입찰자(단독입찰 가능)

나.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경우 입찰가의 선 제출자

다. 체납자 등 「지방세징수법」제77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제한된 자가 아닌 자

7. 매수대금 납부기한 : 매각결정 일부터 7일 이내

가. 매수대금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1회의 최고 절차(7일 이내)를 거친 후, 해당차량은 재 공매 조치합니다.

나. 매수대금 입금계좌는 입찰보증금 입금계좌와는 상이하며 낙찰시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입금계좌 확인 후 낙찰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 등록한 입찰자의 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납부최고서는 송달 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예- 아파트 동, 호수가 없는 경우 등)

8. 매각예정가격 : 감정에 의해 결정된 당해 회 차 공매최저가격

9. 공매중지 및 매각결정의 취소

가. 공매진행 중 또는 낙찰 완료된 물건에 대하여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된 지방세 및 체납처분비 등을 은행 등에 완납한 사실이 추후에 확인되고 배분계산서 작성 전 자동차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나. 매수대금(잔금)을 납부 최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0. 공매물건의 인도절차 및 권리이전 비용

가. 매수대금 납부 후 우리 시(공매 담당자)에게 공매물건 이전 등록지를 통보하고 납부 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권리이전에 따른 제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입니다.

나. 낙찰 받은 자동차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설정한 압류등록 이외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의 말소등록에 따른 등록세 등 또한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정기검사를 경과한 자동차를 낙찰 받은 경우 소유권 이전등록일 부터 15일내 검사를 받는 등 정기검사 또는 정밀검사 해당 여부를 필히 확인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공매물건은 소유권 이전등록 후 자동차등록원부 등 관계서류를 지참하고 자동차보관소에서 인도되며, 운반과 그 운반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마. 직권말소 자동차는 말소부활 → 검사 → 신규 등록 등의 절차 이후 이전등록이 가능하며, 이전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 공매물건의 하자책임 및 위험부담의 이전시기 등

가. 공매물건에 대한 제3자의 권리침해, 공부상의 하자나 행정상의 규제, 규격, 품질, 수량 등의 상이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자동차 점검서의 내용에 불구하고 입찰자의 책임아래 각종 공부 확인 및 자동차보관소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직접 물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자동차 점검서는 자동차 상태 및 중고차 시세 등을 감안하여 (주)오토마트에서 작성하며,「자동차관리법」제13조 제1항 제7호 및 자동차등록 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차령 10년 초과하는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점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매수대금 납부 후 그 매각물건에 생긴 소실, 훼손, 도난, 기능상 이상 유무 등 위험은 그 물건의 이전등록 여부, 현실의 인도유무에 불구하고 낙찰자의 부담이므로 매수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완납한 때에는 즉시 인수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공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또한,「지방세법」의 취득, 등록세 과세대상의 구입비용은「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공제 제외**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 신용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는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바랍니다.**

예) 매각결정통지서의 전 차주의 주민(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등.

다. 공매물건 점검과정에서 자동차 급발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안전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 소유권이전 시 기존 번호판으로 이전등록 하시고. 번호판이 없는 경우(분실)에는 해당등록 관청에서 신규(전국)번호판으로 재교부 바랍니다.**

마. 낙찰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서 및 최고납부서는 발송하지 않습니다.

바. 낙찰자 소유권이전등록 후 보관소에서 차량인수 시 필히 번호판 부착 및 봉인 후 출고하시기 바랍니다.(번호판 미 부착 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사. 차량 보관 장소 : (주)오토마트 보관소 (☏ 032-578-0442)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관 징수기동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박은영(☏ 032-440-8445, 844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1	02무6349	SM7	르노삼성	2005	280,000	4회	20190416
2	07누3605	프리스타일	포드	2006	800,000	3회	20190725
3	17어5654	SM7	르노삼성	2005	240,000	3회	20190718
4	20부3370	투싼	현대	2008	240,000	3회	20190710
5	65저6608	BENZ S350	벤츠	2003	400,000	3회	20190718
6	07가5983	쏘나타	현대	2006	360,000	2회	20190924
7	20오7500	SM5	르노삼성	2007	180,000	2회	20190930
8	26오2447	싼타페	현대	2011	1,800,000	2회	20190930
9	34고3602	NEW그랜저XG	현대	2002	270,000	2회	20190926
10	50수8843	렉서스GS350	렉서스	2007	630,000	2회	20190925
11	62라1170	그랜저	현대	2009	900,000	2회	20191001
12	86누6386	포터Ⅱ(PORTERⅡ)	현대	2007	360,000	2회	20191011
13	인천31무5534	렉스턴	쌍용	2002	360,000	2회	20191022
14	53라5918	체어맨W	쌍용	2011	3,150,000	2회	20191231
15	01구5263	에쿠스	현대	2004	400,000	1회	20200116
16	01로0768	레조2.0SLPGAT	대우	2003	250,000	1회	20200218
17	03우1121	뉴베르나	현대	2002	200,000	1회	20200212
18	04거2238	액티언	쌍용	2006	400,000	1회	20200218
19	04라1647	레이	기아	2017	6,000,000	1회	20200106
20	07주8246	오피러스	기아	2007	400,000	1회	20200206
21	12어9434	싼타페	현대	2011	2,000,000	1회	20200120
22	13어2741	BMW 520d	BMW	2011	5,000,000	1회	20200210
23	15나5627	스포티지	기아	2007	500,000	1회	20200130
24	19가4266	BMW530i	BMW	2007	500,000	1회	20200210
25	20너9104	아반떼	현대	2011	2,000,000	1회	20200131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26	20러7058	카니발II	기아	2003	400,000	1회	20200206
27	21도0176	스포티지	기아	2016	13,000,000	1회	20200121
28	21오2894	K3	기아	2013	4,000,000	1회	20200219
29	22로8285	짚컴패스	지프	2014	6,000,000	1회	20200224
30	23너5052	제네시스	현대	2012	4,500,000	1회	20200203
31	24러9210	스파크1.0DOHC	GM	2012	1,000,000	1회	20200214
32	25주3352	베라크루즈	현대	2008	2,000,000	1회	20200210
33	26구4750	SM520	르노삼성	2001	250,000	1회	20200210
34	26더1943	BMW520dxDrive	BMW	2015	14,000,000	1회	20200123
35	29소3844	제네시스	현대	2015	11,000,000	1회	20200108
36	30라2679	토스카2.0DOHC	대우	2010	1,000,000	1회	20200113
37	31어9096	그랜져	현대	2006	700,000	1회	20200129
38	35다8577	A8 LWB 3.0 TDI quattro	아우디	2012	11,000,000	1회	20200120
39	35로8617	벨로스터(VELOSTER)	현대	2013	5,500,000	1회	20200217
40	36누7822	프라이드	기아	2013	2,500,000	1회	20200103
41	36도5653	SM5	르노삼성	2010	1,500,000	1회	20200116
42	36도6748	쏘나타(SONATA)하이브리드	현대	2012	1,500,000	1회	20200130
43	36모6711	카이런	쌍용	2008	500,000	1회	20200211
44	36보5949	쏘나타(SONATA)	현대	2007	500,000	1회	20200108
45	36서6325	렉서스ES330	렉서스	2005	500,000	1회	20200116
46	37노9227	CC 2.0 TDI	폭스바겐	2011	2,000,000	1회	20200225
47	38무6245	캡티바2.0D디젤	시보레	2014	6,000,000	1회	20200213
48	39도8833	SM5	르노삼성	2007	500,000	1회	20200213
49	40누3444	SM5	르노삼성	2010	1,500,000	1회	20200116
50	42버4890	A63.0TFSIquattro	폭스바겐	2012	7,000,000	1회	20200115

자동차 공매대상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제조사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공매 차수	인도일
51	54모9052	쏘나타	현대	2008	500,000	1회	20200203
52	57너1322	K5	기아	2011	2,000,000	1회	20200103
53	58누1636	그랜저	현대	2013	6,500,000	1회	20200102
54	60더6067	모닝	기아	2016	3,000,000	1회	20200217
55	64너5935	SM3	르노삼성	2015	3,500,000	1회	20200205
56	65누3881	모닝	기아	2018	6,000,000	1회	20200128
57	65두5037	체어맨	쌍용	2005	400,000	1회	20200206
58	66거3718	BMW745L ¡	BMW	2002	500,000	1회	20200206
59	66보0488	모하비	기아	2011	7,000,000	1회	20200120
60	68머7446	카이런	쌍용	2008	1,000,000	1회	20200217
61	69더2149	SM7	르노삼성	2008	700,000	1회	20200205
62	69머9647	쏘나타	현대	2010	2,000,000	1회	20200213
63	86보8754	봉고Ⅲ1톤	기아	2006	500,000	1회	20200108
64	86부8860	액티언스포츠	쌍용	2010	1,500,000	1회	20200203
65	86어1541	포터Ⅱ(PORTERⅡ)	현대	2008	400,000	1회	20200210
66	89더0997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7	9,000,000	1회	20200104
67	90로7503	포터Ⅱ(PORTERⅡ)	현대	2012	1,500,000	1회	20200102
68	90로8428	봉고Ⅲ1.2톤	기아	2014	5,000,000	1회	20200213
69	90마6932	봉고Ⅲ1.2톤	기아	2014	5,000,000	1회	202001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23호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사업 공모

해양주권 수호의 거점인 인천의 '해양도시' 이미지를 재조명하고 알림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천문화예술의 융성을 기대하고 시민들에게 '해양문화'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인천문화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4. 27.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나. 사업기간 : 2019. 7월 ~ 12월 중

다. 사업장소 : 인천광역시 소재 전시실 등

※ 미술축전과 국제아트페어를 통합한 대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규모있는 전시장 필요

라. 지원규모 : 1개 단체

마. 지원분야 : 미술 분야

바. 사 업 비 : 100백만원(전액시비 : 민간행사사업보조)

사. 사업내용 : 해양' 을 주제로 미술축전을 개최

아. 사업유형

- '해양' 을 주제로 한 다양한 미술작품 전시(국내외 유명작가 초대전 및 교류행사)
- 국내외 유명작가 아트페어 동반 개최

2.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인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미술분야)

나. 신청자격 제외 대상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한 법인·단체

3. 공모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20. 4. 27(월) ~ 5. 8.(금)

나. 접수기간 : 2020. 5. 8.(금) / 1일간(09:00~18:00)

다.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본관 5층 / 440-4023)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소속 직원)

※ 우편, 이메일 및 팩스 접수 불가

4. 신청서류

가. 지원신청서,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법인(단체) 소개서, 서약서 각 1부

나. 사업계획서(프리젠테이션 자료포함) 7부

다.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1부

라. 기타 서류(활동실적자료 등)

※ 서류 제출시 신분증(대리인은 위임장 포함)을 지참하고 위의 “가~라”의 신청 서류가 저장된 USB 별도 제출

5. 사업심사 및 선정

가. 심사방법 및 진행

- 1단계 : 서류심사
- 2단계 : 발표(프리젠테이션)·인터뷰 심사(자체 선정심의위원회)
- 3단계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및 최종 선정

나. 선정기준 : 사업목표 적절성, 사업내용 적절성, 예산계획 적정성, 사업실행 가능성, 사업수행 능력, 사업 효과성 등

※ 서류심사 결과 및 발표·인터뷰 심사일정은 별도 통보
※ 발표 및 인터뷰 심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동일사업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지원 받고 있는 법인(단체)인 경우 지원 배제

6.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실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통장사본 제출 / 미 제출시 선정자격 취소

나. 보조금과 자부담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및 사용

다.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구비하여 집행하여야 함

라.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2개월 이내 제출(별도 서식)

7.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반드시 지정된 서식을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 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에서 제외.

다. 신청한 법인·단체가 1개일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모시에도 1개일 경우 적격심사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함.

라. 심사결과 적격 단체가 없을 시에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마. 선정된 법인(단체)은 총사업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바.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사.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아. 공모신청서에 서류 미비로 인한 탈락은 제출자 책임임.

자.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440-4023)에 문의.

【참고2】 지원신청서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사업자 선정 공모신청서

<table>
<tr><td colspan="2">단 체 명</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2">총사업비</td><td>천원</td><td>보조금</td><td>천원</td><td>자부담</td><td colspan="2">천원</td></tr>
<tr><td colspan="2">사업내용</td><td colspan="6">-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내용 :</td></tr>
<tr><td colspan="2" rowspan="5">단체등록사항</td><td>등록기관</td><td colspan="3"></td><td>대표자</td><td></td></tr>
<tr><td>등 록 일</td><td colspan="5">년 월 일</td></tr>
<tr><td>소 재 지</td><td colspan="5">(우편번호)</td></tr>
<tr><td>회 원 수</td><td colspan="5"></td></tr>
<tr><td>사무국 직원수</td><td colspan="5">명(상근직원 명)</td></tr>
<tr><td rowspan="6">단체
연락처</td><td rowspan="2">대표자</td><td>성 명</td><td colspan="2"></td><td>휴대폰</td><td colspan="2"></td></tr>
<tr><td>대표전화</td><td colspan="2"></td><td>팩스번호</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실무자
책임자</td><td>직 위</td><td colspan="2"></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휴대폰</td><td colspan="2"></td><td>e-mail</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2">회 계
실무자</td><td>직 위</td><td colspan="2"></td><td>성 명</td><td colspan="2"></td></tr>
<tr><td>휴대폰</td><td colspan="2"></td><td>e-mail</td><td colspan="2"></td></tr>
</table>

2020년 5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신청시 제출서류(1.2번 파일 제출 포함)

1.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PPT 발표자료 포함) 각1부.
2. 주요활동실적 증빙자료(사업별 5장 이내) 각 1부
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접 수	접수일자	접수번호	담당부서	접수자
	2020. 5. .		문화예술과	

【참고3】 위임장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사업자 선정 위임장

대표자	법인 또는 단 체 명		법인(단체)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대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소 속		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주 소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에 지원 신청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단체)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 5 .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짐

【참고4】 법인(단체) 소개서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사업자 선정 법인(단체) 소개서

1. 단체 현황

<table>
<tr><td rowspan="6">단체정보</td><td>단체명</td><td colspan="5"></td></tr>
<tr><td>등록번호</td><td colspan="2"></td><td>대표자</td><td colspan="2"></td></tr>
<tr><td>등록일</td><td colspan="2">. . .</td><td>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td><td colspan="2"></td></tr>
<tr><td>단체 주소</td><td colspan="5">(우) 인천광역시</td></tr>
<tr><td>주사무소</td><td colspan="5">공공건물[ ], 단체/법인소유[ ], 임대(유상[ ],무상[ ]), 기타[ ]</td></tr>
<tr><td rowspan="2">연락처</td><td colspan="5">대표전화 : 032-123-1234 팩스번호 : 032-123-4567</td></tr>
<tr><td colspan="5">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010-****-****
E-mail :</td></tr>
<tr><td>홈페이지</td><td colspan="5">http://</td></tr>
<tr><td rowspan="11">단체소개</td><td>설립목적</td><td colspan="5">○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정관/회직 제2조)</td></tr>
<tr><td>연혁</td><td colspan="5">○ ‘90.11.10 ○○ 설립(창립)
○ ‘10.10.28 ○○ 인천시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td></tr>
<tr><td>주요사업</td><td colspan="5">○ 정관 또는 회칙의 규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에 대해 기재
○
○</td></tr>
<tr><td>조직구성</td><td colspan="5">○처/○국/○과/○팀</td></tr>
<tr><td>인력현황</td><td>회원수</td><td>명
(2020년 1월 현재)</td><td>상근 인원</td><td colspan="2">명</td></tr>
<tr><td></td><td></td><td>유급 인원</td><td colspan="2">명</td></tr>
<tr><td rowspan="6">대표자 및 임원 현황</td><td colspan="5"><table>
<tr><th>직위</th><th>성명</th><th>생년월일</th><th>연락처</th><th>재직기간</th><th>주요경력</th><th>비고</th></tr>
<tr><td>대표</td><td>나대표</td><td>68.10.25.</td><td>010-****-****</td><td>‘16.01.20.~</td><td></td><td>상근</td></tr>
<tr><td>임원</td><td>한임원</td><td>63.01.15.</td><td>010-****-****</td><td>‘17.10.05.~</td><td></td><td>비상근</td></tr>
<tr><td>임원</td><td>신임둘</td><td>80.03.01.</td><td>010-****-****</td><td>‘14.06.29.~</td><td></td><td>상근</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able></td></tr>
<tr><td colspan="5">사무국 직원 현황(상근/비상근 구분)</td></tr>
<tr><td colspan="5"><table>
<tr><td>계</td><td>사무국장
(사무처장)</td><td>팀장</td><td>사원</td><td>기타[ ]</td></tr>
<tr><td>0명/ 0명</td><td>0명/ 0명</td><td>0명/ 0명</td><td>0명/ 0명</td><td>0명/ 0명</td></tr>
</table></td></tr>
</table>

2. 주요 활동 실적

□ 신청사업과 동일(유사)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 이내,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보조금 지원기관 (해당시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2017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예)인천시
2018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자체사업
2019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 동일(유사)사업이 연2회 이상 개최된 경우에도 전부기재

□ 국가, 지자체, 재단, 기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이내, 최대 5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지원기관
			계	보조금	자부담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예)인천시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한국문화 예술위원회
						인천문화 재단

□ 단체 자체사업 추진실적(최근 2년 이내, 최대 5개)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및 성과	사업비(천원)	비 고
		-기 간 : -장 소 : -참여인원 : -주요성과 :		

【참고5】 서약서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사업자 선정 공모 신청자 서약서

단 체 명	

본 단체에서 제출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붙임 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만일 제출한 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였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사업의 선정 무효,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한다.

○ 본 단체는 사업자 선정방식에 동의하며 최근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위반을 하지 않았으며 거짓으로 확인되어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협약서의 내용대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다.

2020년 5월 일

신청인 : 단체명 (직인)

대표자 (사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참고6】 사업계획서

「인천해양국제미술축전」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서

1 사업 개요

사 업 명			
사업추진 기간	2020. . . ~ . .	공연·전시 등 실제추진기간	2020. . . ~ . .(일)
연속개최 회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최초 개최연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장소			
사업규모	- 예술단체 : 팀 - 예 술 가 : 명 - 지원인력 : 명	수혜대상자 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사업추진내용 및 방법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기대효과	- *(간략하게 요약하여 작성)*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5%이내)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보 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 부 담 (해당시 작성)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자부담 내역	(회비 천원, 기부/후원금 천원, 참가비 천원, 기타 천원)				

2 사업목적 및 기획의도

□ 사업 목적

○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기술하여 주시되, 사업 추진 배경이나 필요성 등도 추가로 기재

○

□ 행사 주제 (혹은 기획 의도)

○ ☞ 2020년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에 대한 콘셉트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

○

3 세부추진계획(방법)

□ 세부사업 내용

○

-

○

-

□ 지역성(인천)과 연계된 특성화 (혹은 차별화) 방안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

-

○

-

□ 기존 사업(2019년) 평가 결과를 반영한 개선계획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2019년도 문제점 (혹은 지적사항)	2020년도 개선계획	비 고
-	-	

□ 사업추진일정

일정(기간)	세부추진내용 (활동내용과 추진방법)	비 고
2020. . . ~ . .		
2020. . . ~ . .		

□ 사업 목표

○ 단체의 자체 평가지표 및 목표 설정(1개 이상)

평가지표	목 표	비 고

○ 관람객 수 목표

구 분	관람객 (명)	행사규모 (명)		비 고
		주요행사	부대행사	

☞ 향후, 결과보고시 정확한 산출근거를 제시 / 객관적인 증빙자료(사진, 통계, 보도기사, 관련 리뷰 등)

○ 관람객 수 산출근거

-

○ 참가인원 확보 계획

- 예) 관련 이벤트 및 캠페인 활용 계획

□ 세부 프로그램 내용

○ 주요 행사

-

구 분	내 용		유/무료	비고
개막식	일시			
	장소			
	내용			
본 행사	일시			
	장소			
	내용			
부대행사	일시			
	장소			
	내용			
폐막식	일시			
	장소			
	내용			

○ 사업 장소

-

구 분	공연장 (또는 장소명)	행사장 규모 (객석수 또는 공간면적)	비 고
실내장소			
야외장소			

○ 안전관리계획 ☞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시설관리 책임자, 안전관리 조직도

- 비상시 조치, 연락처

구분	조치담당업무	책임자(소속)	연락처

- 안전관리인력 확보

구분	조치담당업무	관리요원(소속)	비고

- 안전대비 관련 단체보험 가입 계획

- 안전관리 예산

항 목	산출근거	지출액	신청액
안전요원 인건비	10만원×10인×7개 행사	7,000,000원	7,000,000원
행사 보험료	200만원×1식	2,000,000원	자부담
구급약품 구입	50만원×1식	500,000원	자부담

4 사업운영 인력

○

-

연번	역 할	성 명	현직 / 주요경력	비 고
1				상근/비상근 여부
2				
3				
4				
5				
6				
7				
8				
9				

5 예산 계획

□ 사업비 예산편성

(단위 : 원)

지출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항목	비목	합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건비	소 계				
	출 연 료				
	기 획 료				
	단 순 인 건 비				
	원 고 료				
	심 사 비				
	•				※기타 필요항목 기재
사 업 진행비	소 계				
	물 품 구 입 비				
	임 차 비				
	시 상 금				※자부담으로만 편성
	•				※기타 필요항목 기재
	•				
홍보비	소 계				
	인 쇄 비				
	홍 보 비				
	현 수 막				
	•				※기타 필요항목 기재
활동비 (5%이내)	소 계				
	사 무 용 품 비				
	교 통 비				
	특 근 매 식 비				※자부담 우선 편성
	•				※기타 필요항목 기재

<자부담 편성요령>

○ **'사업수입'**(대회 참가비,출품비 등) 발생 시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작성

○ 자부담을 편성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자부담 확보 증빙(자부담 통장사본) 제출

<유의사항>

○ 이행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는 예산편성(자부담) 불필요(단체 별도예산으로 집행)

○ 지방보조금 지원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
(실제 소요금액 보다 부풀려 편성하는 사례 금지)

○ 지출항목은 인건비, 사업진행비, 홍보비, 활동비로 편성(그 외의 항목 불가)하고 그 안에서 다시 출연료, 물품구입비, 홍보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 포괄적 예산편성 불가(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불가)
○ 지출항목내 동일 건의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할하여 편성 불가
【예시 : 리플릿 제작(100만원)을 보조금(50만원)과 자부담 (50만원)으로 계상 불가】
○ 반드시 산출기초 작성 및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기재
○ 보조금 편성(사용)불가 항목

인정불가 경비	세 부 내 역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품 및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단체 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화설비 등
단체 대표자 대상 집행	◦ 단체 대표자에게 집행되는 인건비성 사례비 (강사료, 연출료, 안무료, 출연료, 진행비, 예술감독비, 전시기획비, 심사비, 연구비 등)
사업과 무관한 비용	◦ 보조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비(식대), 간담회비, 다과비, 교통비, 숙박비, 유류대 등
기타 사항	◦ 시상금,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 수입 예산(예상수익금 포함) 및 사용계획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출내역 (*구체적으로 작성)	사용계획	비고
합계					
사업 수입	소 계			※ '사업수입'은 '사업비 예산편성'의 자부담 금액과 일치시켜 작성	
	대회 등 참가비				
	출품비				
	기 타				
민간 재원	소 계				
	단체 회비				
	기업 등 후원금				
	개인 기부금				
	기 타				

6 홍보계획

○ 예) 사전 홍보 계획

-

○ 예) 매체 홍보 계획

-

○ 예) SNS 및 온라인 홍보 계획

-

○ 예) 인쇄물 또는 설치물 제작·활용 계획

-

○ 예)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홍보 활성화 계획

7 파급효과(기대효과)

□ 행사 목적 및 취지 기여도

○

-

□ 시민 수혜도

○

-

□ 사업수행 단체 및 문화예술 발전 기여도 등

○

-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32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공사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영종국제도시) ~ 서구 청라동(청라국제도시)

○ 결정내용: 영종~청라간 연결도로(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177	27~44.2	주간선 도로	4,501	광장 505호	광장 90호	자동차 전용도로		2012. 5. 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104호)	
변경	대로	3	177	30 (27~77)	주간선 도로	4,600	광장 505호	광장 90호	일반 도로			선형변경 폭원변경

2)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 3-177	대로 3-177	• 선형변경 • 폭원변경 • 도로 사용형태 변경 - 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 경인항 주항로를 고려 도로선형 변경 필요 • 요금소 및 램프형식 변경에 따른 도로폭원 변경 필요 •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 편의성 증진과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 사용형태 변경 필요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광장) 결정(변경) 조서

1)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505	광장	교통 광장	중구 중산동 1097-55번지 일원	153,801	감) 57,316	96,485	2012. 5.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4호)	
변경	90	광장	교통 광장	서구 청라동 100-55번지 일원	49,410	7,274	56,684	2012. 5. 7.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04호)	

2)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장 505	교통 광장	• 면적변경 - 기정 : 153,801㎡ - 변경 : 96,485㎡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변경에 따른 영종지역내 접속 및 입체교차를 위한 교통광장 변경 필요
광장 90	교통 광장	• 면적변경 - 기정 : 49,410㎡ - 변경 : 56,684㎡ • 행정구역 정정 - 원창동 ⇒ 청라동	• 영종~청라 연결도로(제3연륙교) 변경에 따른 청라지역내 접속 및 입체교차, 유지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한 교통광장 변경 필요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 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03, 연수구 갯벌로 12)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영종청라개발과, 032-453-7622,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 인천광역시 중구청(도시개발과, 032-760-7517, 중구 신포로27번길 80)

○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개발과, 032-560-4762, 서구 서곶로 307)

4. 관계도서: 게재 생략 (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33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제320393호	주식회사 비젼플러스 배송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71, 하이베라스빌딩 씨동 805호(계산동)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39호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검단중앙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최초) 인가를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도서는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4), 인천광역시청(공원조성과 ☎ 032-458-7038), 서구청(공원녹지과 ☎ 032-560-4494)에 비치하였습니다.

2020.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산1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

2) 명 칭 : 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검단중앙 공원	도시자연 공원	605,733	-	605,733	-	1998.06.12. (인고 118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계산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2.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붙임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 계양공원사업소, 서구청

붙임 : 토지조서 1부

□ 토지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계				**725,709.0**	**605,733.0**			1/1				
1	서구	왕길동	1-2	답	26.0	26.0	김OO	인천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29-OOOO	1/1				
2	서구	왕길동	19-1	도	201	18.0	권OO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OOO번길 1 (오류동)	1/2				
							주식회사 OO후레임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OOOO-16, 2동(왕길동)	1/2	OO 은행	서울중구 을지로79 (김포산단지점)	근저당권 설정	
										권OO	서구 검단로 OO	근저당권 설정	
3	서구	왕길동	20-1	답	201	22.0	권OO	인천서구 검단로OOO번길 1	1/1				
4	서구	왕길동	21-1	답	2,142.0	2,142.0	심OO	서울 용산구 효창동 5-OOO	1/76				
							심OO	김포군 대곶면 석정리 OOO	1/76				
							조OO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0, 23동 OOO호(대치동, 은미아파트)	1/8				
							정OO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0, 23동 OOO호(대치동, 은미아파트)	1/8				
							박O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4길 83, OOO호(서초동 ,월드메르디앙)	2/44				
							박O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4길 83, OOO호(서초동 ,월드메르디앙)	2/44				
							김OO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26동 OOO호(개포동,주공아파트)	1/68				
							손OO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75, 112동 OOO호(금암동, 우림루미아파트	4/68				
							손OO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75, 112동 OOO호(금암동, 우림루미아파트	2/68				
							손OO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75, 112동 OOO호(금암동, 우림루미아파트	4/7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손OO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75, 112동 OOO호(금암동, 우림루미아파트	2/76				
							손OO	충청남도 계룡시 장안로 75, 112동 OOO호(금암동, 우림루미아파트	2/76				
							박O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64길 83, OOO호(서초동 ,월드메르디앙)	2/76				
							김OO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90, 114동 OOO호(이충동, 현대아파트)	6/68				
							김OO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2길 OO(개포동,2층)	4/68				
							이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다호3길 OO(도두이동)	3/176				
							김OO	인천광역시 서구 원정로34번길20, 109동 OOOO호(마전동,동아아파트)	3/176				
							김OO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3길 57, 110동 OOOO호(신정동,양천아파트)	3/88				
							이OO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57, 601동 OOO호 (상암동,상암월드컵파크6단지)	2/44				
							심OO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낼로319번길 5, OOO호(청라동)	3/76				
							심OO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병목안로 220, OOO동 208호 (안양동,홍화브라운빌아파트)	2/44				
							진OO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장흥로 OOO-16	3/76				
5	서구	왕길동	21-2	전	2,655.0	2,655.0	권OO	인천서구 검단로OOO번길 1	1/1				
6	서구	왕길동	24	답	2,988.0	568.0	OOOO판관공파종중	인천서구 당하동 OOO	1/1				
7	서구	왕길동	25	답	456.0	179.0	문OO	경기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70번길 29,현대아파트 108동 OOO호	1/1				
8	서구	왕길동	26	답	4,241.0	4,241.0	박OO	인천서구 심곡동 302 한국아파트 202-OOOO	1/2	OO농협협동조합	서구 가정동482-4	근저당권설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임OO	인천서구 심곡동 302 한국아파트 202-OOOO	1/2				
										OO농협협동조합	서구 가정동482-4	지상권 설정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67번지	지상권 설정	
9	서구	왕길동	26-1	임	1,823.0	1,667.0	이OO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77, 101-OOOO호 (신정동, 유원목동아파트)	496/1823				
							이OO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43, 104동 OOO호 (서초동, 유원서초아파트)	496/1823				
							권OO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바길 35-2, 5동 OOO호(신당동,성지타운)	100/1823				
							양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76번길 25, 비동 OOO호(부평동,블루밍아파트)	731/1823	이OO	서울영등포구당산동3가558-3더파크365-1411	근저당권 설정	
10	서구	왕길동	30-5	임	61.0	61.0	정OO	서울강남구 논현동 261 현대인텔렉스아파트 OOOO	1/1				
11	서구	왕길동	107-10	목	120.0	120.0	이OO	인천서구 청라캐낼로 297,OOO-OOO	1/1	기술보증기금	부산남구 문현금융로33 10층	가압류	
										신용보증기금	대구 동구 첨단로7	가압류	
										OO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종로구 김상옥로29	가압류	
										인천서구		압류	
										당진시		압류	
										국(서인천세무서)		압류	
12	서구	왕길동	107-17	대	12.0	12.0	정OO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71길 16, OOO호	1/1				
13	서구	왕길동	108	전	436.0	306.0	권OO	인천서구 왕길동 왕길리 OOO	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4	서구	왕길동	109	장	590.0	11.0	㈜젠OO	인천남동구 석촌로 OO,6층	1/1	주식회사 OO은행	서울중구 남대문로84 (용종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15	서구	왕길동	109-1	임	116.0	116.0	한국OO공사	전남 나주시 전력로 OO	1/1				
16	서구	왕길동	111-10	도	68.0	68.0	인천시		1/1				
17	서구	왕길동	164-17	도	10.0	10.0	인천시		1/1				
18	서구	왕길동	193-1	전	1,261.0	12.0	김OO	인천서구 마전동 마전지구 13블럭 1-19롯트 대주파크빌아파트 703-OOO	1/1	주식회사 OO은행	서울 중구 회현동1가203 (김포양촌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19	서구	왕길동	193-3	도	426.0	34.0	인천시		1/1				
20	서구	왕길동	196-5	장	4,344.0	36.0	㈜OO에이엘	인천서구 원당대로 OOO-11	1/1	주식회사 OO은행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26(서인천종합금융센타)	근저당권 설정	
21	서구	왕길동	204-49	도	1,128.0	736.0	인천시		1/1				
22	서구	왕길동	204-51	도	1,992.0	767.0	인천시		1/1				
23	서구	왕길동	204-53	임	536.0	536.0	문OO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 OOO	384/1548				
							인천광역시		1164/1548				
24	서구	왕길동	610	구	3,995.0	654.0	국(국토교통부)		1/1				
25	서구	왕길동	618-1	도	578.0	92.0	국(국토교통부)		1/1				
26	서구	왕길동	618-10	도	157.0	70.0	국(국토교통부)		1/1				
27	서구	왕길동	산1-1	임	13,587.0	9,286.0	이OO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117번길 15-OO(송림동)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1,104동 OOOO호(심곡동, 광명아파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이OO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107, 616동 OOOO호 (진관동, 은평뉴타운 상림마을)					
							이OO	인천광역시 남구 수봉안길35번길 OO(숭의동)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OOO(백석동)					
							이OO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808번길 63,OOO호(원종동,문화아파트)					
							이OO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삼로 12,208동OOO호(화북이동,제주삼화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7번길 5, 에이동 OOO호(연희동,라인빌라)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375번길 OO(경서동)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율도로 OO-1(석남동)					
							이OO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60, 305동OOOO호(신공덕동,신공덕3차삼성래미안아파트)					
28	서구	왕길동	산1-2	임	719.0	430.0	이OO	서울서초구 방배로 239, 102-OOOO	1/1	주식회사 OO은행	서울중구회현동1가203(신대방동지점)	근저당권설정	
29	서구	왕길동	산1-3	임	4,521.0	3,714.0	박OO	인천남동구 논고개로 10, 1209동-OOO호	1/2				
							고OO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오창중앙로 65,616동OOO호(우림필유2차아파트)	1/2				
30	서구	왕길동	산2	임	9,785.0	9,785.0	이OO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OO					
							이OO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OO					
							이OO	인천 남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07동 OOOO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31	서구	왕길동	산2-1	임	2,896.0	1,410.0	이OO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O	1/6				
							이OO	인천시 북구 가좌동 11 주공아파트 204동 OOO호	1/6				
							이OO	김포군검단면 왕길리O	1/6				
							이OO	김포군검단면 왕길리O	1/6				
							김OO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OO-6	1/6				
							이O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포방터2다길 27-3, OOO호(홍은동,1층)	1/6				
32	서구	왕길동	산2-2	임	1,798.0	1,632.0	이OO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OO	1/3				
							이OO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OO	1/3				
							이OO	인천 남구 옥련동 626 럭키송도아파트 107동 OOOO호	1/3				
33	서구	왕길동	산3	임	8,727.0	8,727.0	이OO	경기김포시 풍무동 147 양도마을 105-OOOO	1/1				
34	서구	왕길동	산3-1	임	3,769.0	3,769.0	박OO	인천연수구 동춘동 923 금호타운104-OOO	1/1				
35	서구	왕길동	산4	임	14,380.0	13,633.0	이OO	부천시 남구 괴안동 199-2 동신아파트 15동 OOO호	4/23				
							이OO	남구 도화동 OOO-5	6/23				
							이OO	남동구 간석동 210-3 삼익목화아파트 2동 OOO호	3/23				
							이OO	남동구 간석동 495-5 금호맨션 4동 OOO호	3/23				
							이OO	중구 북성동 1가 98-OOO	3/23				
							이OO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49, 109동OOO(동춘동,풍림3차아파트)	1/46				
							이OO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49, 109동OOO(동춘동,풍림3차아파트)	1/46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이OO	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49, 109동OOO(동춘동,풍림3차아파트)	6/46				
36	서구	왕길동	산5-1	임	31,438.0	28,497.0	고OO	인천 부평구 갈산동 363 태화아파트 2동 OOOO호	6287.6/31438				
							고OO	인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18동 OOOO호	6287.6/31438				
							고OO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0 장미아파트 비동 OOO호	6287.6/31438				
							고OO	서울 도봉구 창동 825 북한산 아이파크 508-OOOO	6287.6/31438				
							고OO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7, 1103동 OOOO호(논현동, 에코메트로한화꿈에그린아파트)	6287.6/31438				
37	서구	왕길동	산5-2	임	496.0	361.0	오OO	인천동구 송현동 OO	1/1				
38	서구	왕길동	산5-3	임	1,388.0	572.0	이OO	마전동 OOO-5	2/19				
							이OO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46동OOO호	2/19				
							이OO	마전동 OOO-5	2/19				
							이OO		2/19				
							이OO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1 주공아파트 503동OOO호	2/19				
							이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0 풍림아이원아파트 605-OOO	3/114				
							이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1 송도더샵퍼스트월드 2-OOOO	3/114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7-OOO	3/228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7-OOO	3/228				
							이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0 풍림아이원아파트 605-OOO	3/11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이OO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OOO	3/114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7-OOO	1/19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7-OOO	1/19				
							성OO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로 9,904동 OOO호(장기동, 고창마을반도유보라아파트)	285/4332				
							이OO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로 9,904동 OOO호(장기동, 고창마을반도유보라아파트)	285/4332				
							박OO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67-1. 4동 OOO호(당하동,청림캐슬)	2/19				
39	서구	왕길동	산5-4	임	298.0	298.0	이OO	마전동 OOO-5	2/19				
							이OO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9 주공아파트 446동 OOO호	2/19				
							이OO	마전동 OOO-5	2/19				
							이OO		2/19				
							이OO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1 주공아파트 503동OOO호	2/19				
							이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40 풍림아이원 아파트 605-OOO	3/114				
							이OO	인청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4-1 송도더샵퍼스트월드 2-OOOO	3/114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7-OOO	3/228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7-OOO	3/228				
							이OO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3-10 풍림 아이원아파트 214-OOO	3/114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이OO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6-OOO	3/114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7-OOO	1/19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24-23 한화아파트 207-OOO	1/19				
							이OO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1로 9, 904동 OOO호(장기동, 고창마을 반도유보라아파트)	285/2166				
							이OO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학로 9번길 64, OOO호 (광안동,투킹스턴)	2/19				
40	서구	왕길동	산7	임	2,975.0	2,263.0	차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2-8 우성아파트 402동 OOO호	1/2	주식회사 OO은행	서울중구 회현동1가203 (신길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차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76 강변래미안아파트 307동 OOOO호	1/2				
41	서구	왕길동	산8-1	임	910.0	910.0	김OO	인천북구 가정동 OOO	1/1				
42	서구	왕길동	산8-2	임	7,373.0	2,891.0	차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02-8 우성아파트 402동 OOO호	1/2	주식회사 OO은행	서울중구 회현동1가203 (신길동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차OO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76 강변래미안아파트 307동 OOOO호	1/2				
43	서구	왕길동	산8-3	임	5,555.0	5,555.0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1, 306동 OOO호(신곡동,현대아파트)	2882/6057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1, 306동 OOO호(신곡동,현대아파트)	2882/6057				
							방OO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121, 306동 OOO호(신곡동,현대아파트)	293/6057				
44	서구	왕길동	산8-4	임	581.0	558.0	인천광역시		173/1848				
							인천광역시		1105/1848				
							노OO	인천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26, 454-OOOO호	570/184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45	서구	왕길동	산8-5	임	2,902.0	2,902.0	신OO	서울성북구 종암동 3-OOO	1/1				
46	서구	왕길동	산8-6	임	636.0	636.0	이OO	인천동구 화수동 O	1/1				
47	서구	왕길동	산8-7	임	1,456.0	1,456.0	신OO	인천동구 송현동 1 송현아파트 14-OOO	1/1				
48	서구	왕길동	산8-12	임	470.0	470.0	인천시		1/1				
49	서구	왕길동	산8-13	임	1,267.0	961.0	인천광역시		173/1848				
							인천광역시		1105/1848				
							노OO	인천서구 크리스탈로74번길 26, 454-OOOO호	570/1848				
50	서구	왕길동	산9	임	12,595.0	11,517.0	학교법인OO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OOO	1/1	인천서구		압류	
										박OO	강릉시구정면구정중앙로OO	강제경매개시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원원주시건강로32(강릉지사)	압류	
51	서구	왕길동	산9-1	임	893.0	893.0	김OO	인천남동구 만수동 983-1 삼환아파트 106-OOO	1/1				
52	서구	왕길동	산10	임	26,424.0	26,232.0	학교법인OO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OOO	1/1	인천서구		압류	
53	서구	왕길동	산10-1	임	258.0	258.0	김OO	인천광역시 남구 석바위로53번길 17, OOO호(주안동)	224.94/258				
							김OO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379번길 14,OOO호(학익동)	33.06/258	국(서인천세무서)		압류	
54	서구	왕길동	산10-2	임	618.0	618.0	김OO	인천남구 주안동 OOO-3	1/1				
55	서구	왕길동	산10-3	임	568.0	568.0	차OO	인천남구 주안동 OOO-3	1/1				
56	서구	왕길동	산11	임	20,690.0	20,690.0	학교법인OO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OOO	1/1	인천서구		압류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167번지	구분지상권설정	
57	서구	왕길동	산11-1	임	256.0	256.0	학교법인OO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OOO	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58	서구	왕길동	산11-2	임	1,773.0	652.0	학교법인OO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OOO	1/1	인천서구		압류	
59	서구	왕길동	산11-3	임	488.0	488.0	차OO	인천남구 주안동 OOO-3	1/1				
60	서구	왕길동	산12-1	임	16,165.0	16,165.0	권OO	서울은평구 백련산로2길 19,102동-OOO호, (응암동,백련산힐스테이트1차)	1652.9/16165				
							권OO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8, 107동 OOO호 (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1단지)	1652.9/16165				
							권OO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8, 107동 OOO호 (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1단지)	1487.61/16165				
							권OO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8, 107동 OOO호 (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1단지)	11371.59/16165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67번지	구분지상권설정	
61	서구	왕길동	산12-2	임	16,522.0	14,538.0	학교법인OO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OOO	1/1	인천서구		압류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67번지	구분지상권설정	
62	서구	왕길동	산12-3	임	238.0	238.0	학교법인OO학원	강원도강릉시 공제로 OOO	1/1				
63	서구	왕길동	산13	임	397.0	397.0	양OO	서울양천구 신월로13길 16,OOO호	1/1				
64	서구	왕길동	산14-1	임	70,909.0	68,308.0	OOOO판관공파종중	인천서구 왕길동 당하리 OOO	1/1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삼성동 167번지	지상권설정	
65	서구	왕길동	산14-2	임	3.0	3.0	국(산림청)		1/1				
66	서구	왕길동	산16	임	4,131.0	4,110.0	OOOO판관공파종회	인천서구 독정로 16-OO	1/1				
67	서구	왕길동	산16-4	임	907.0	821.0	인천시		1/1				
68	서구	왕길동	산76-1	임	730.0	730.0	이OO	인천남동구 만수동 OOO-16	3/10				
							이OO	인천남동구 만수동 OOO-16	2/1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이OO	인천남동구 만수동 OOO-16	2/10				
							호OO	인천남동구 만수동 OOO-16	0.74/10				
							박OO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59-3 유림연립 이동 OOO호	0.32/10				
							강OO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85-2 성업아파트 2동 OOO호	0.22/10				
							김OO	계양구 효성동 78-1 신한아파트 101동 OOO호	0.22/10	재단법인OO재단중앙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OO	가압류	
							김OO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OOO-9	0.15/10				
							김OO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314,304동 OOO호	1.35/10				
69	서구	왕길동	산76-2	임	1,411.0	1,411.0	정OO	인천서구 완정로92번길 28, 106-OOOO	1/1				
70	서구	왕길동	산76-3	임	6,953.0	6,953.0	박OO	서울양천구 목동중앙로 143,101-OOO	1/1				
71	서구	왕길동	산76-4	임	793.0	793.0	한OO	인천북구 가정동 OOO					
							이OO	인천북구 가정동 OOO					
72	서구	왕길동	산76-5	임	1,763.0	1,763.0	권OO	인천남동구 간석동 OOO-11	1/1				
73	서구	왕길동	산76-6	임	1,140.0	1,140.0	한OO	인천 북구 산곡동 294-35 우성아파트 107-O	66/1140				
							박OO	인천 서구 석남동 495-16 원광빌라 에이-OOO	66/1140				
							박OO	인천 서구 가좌동 OOO	198/1140				
							박OO	인천 서구 가좌동 OOO	331/1140				
							한OO	인천 서구 가좌동 OOO-11	66/1140				
							금OO	인천 남구 용현동 OOO-115	66/114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김OO	인천 서구 신현동 254 주공아파트 29동 OOO호	118.5/1140				
							김OO	인천 서구 신현동 OOO-2	118.5/1140				
							배OO	인천 동구 샛골로194번길 OO-2	60/1140				
							강OO	인천 남구 도화동 60-2 선인아파트 비-OOO	50/1140				
74	서구	왕길동	산76-7	임	202.0	202.0	권OO	인천남구 경인북길279번길 O	136/202				
							오OO	오류리 OOO-79	66/202				
75	서구	왕길동	산76-8	임	727.0	727.0	서OO	인천남동구염전로 440,101동OOOO호 (간석신동아파밀리에명품아파트)	1/1				
76	서구	왕길동	산76-12	임	474.0	404.0	인천시		1/1				
77	서구	왕길동	산76-14	임	102.0	90.0	인천시		1/1				
78	서구	왕길동	산77-1	임	15,711.0	15,332.0	OOOO상촌공파대암공종회	인천서구 왕길동 OOO	1/1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 삼성동167번지	구분지상권설정	
79	서구	왕길동	산77-2	임	3,174.0	3,094.0	OOOO상촌공파대암공종회	인천서구 왕길동 OOO	1/1				
80	서구	왕길동	산78	임	8,720.0	7,966.0	국(산림청)		1/1				
81	서구	왕길동	산78-2	임	222.0	222.0	국(산림청)		1/1				
82	서구	왕길동	산79	임	341.0	341.0	이OO	인천시동구 송림동 O	1/1				
83	서구	왕길동	산79-1	임	375.0	375.0	조OO	서울관악구 남현동 1132 홍화브라운빌아파트 101-OOO	1/1				
84	서구	왕길동	산79-2	임	375.0	375.0	장OO	인천남구 도화동 OOO	209/375	국(남인천세무서)		압류	
										주식회사	서울중구남대문	가압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OO은행	로2가10-1		
										인천남구		압류	
							장OO	인천 중구 내동 OOO	166/375				
85	서구	왕길동	산80	임	10,314.0	10,212.0	이OO	인천남동구 간석동 OOO	1/1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OO화학주식회사	서울중구소공동 50	근저당권 설정	
										OO화학주식회사	서울중구소공동 50	지상권설정	
										OO화학주식회사	서울중구소공동 50	근저당권 설정	
86	서구	왕길동	산81	임	793.0	793.0	이OO	인천부평구 장제로 122-1, OOO호	1/21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28, 105동 OOO호 (마전동, 검단아이파크아파트)	2/21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21, 101동 OOOO호 (가정동, 하나아파트)	1/21				
							이OO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16, 102동 OOO호(신정동,쌍용아파트)	1/21				
							이OO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190, 101동 OOO호(월송동, 월송마을한성아파트)	1/21				
							이OO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8, 106동 OOO호(도림동,벽산블루밍아파트)	1/21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22-1, OOO호 (부평동,주영하이츠빌)	1/21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28, 105동 OOO호 (마전동, 검단아이파크아파트)	2/21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21, 101동 OOOO호(가정동, 하나아파트)	1/2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이OO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16, 102동 OOO호(신정동,쌍용아파트)	1/21				
							이OO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190, 101동 OOO호(월송동, 월송마을한성아파트)	1/21				
							이OO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8, 106동 OOO호(도림동,벽산블루밍아파트)	1/21				
							이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122-1, OOO호 (부평동,주영하이츠빌)	1/21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92번길 28, 105동 OOO호 (마전동, 검단아이파크아파트)	2/21				
							이OO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318번길 21, 101동 OOO호 (가정동, 하나아파트)	1/21				
							이OO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 16, 102동 OOO호(신정동,쌍용아파트)	1/21				
							이OO	경기도 여주시 우암로 190, 101동 OOO호(월송동, 월송마을한성아파트)	1/21				
							이OO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로 8, 106동 OOO호(도림동,벽산블루밍아파트)	1/21				
87	서구	왕길동	산82-1	임	21,521.0	21,107.0	오OO	인천시 남구 주안동 OOO-8	3305.8/21521				
							최OO	인천시 북구 부개동 OOO	2347.36/21521				
							김OO	인천시 남구 주안동 18-2 미도아파트 3동 OOOO호	1652.9/21521				
							최OO	인천남구 주안동 OOO-22	3305.8/21521				
							최OO	인천시 북구 산곡동 294-35 우성아파트 114동 OOO호	3305.8/21521				
							정OO	인천시 북구 산곡동 294-35 우성아파트 107동 OOO호	495.87/21521				
							노OO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05 부일연립 2동 OOO호	6611.6/2152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05 부일연립 2동 OOO호	3305.8/21521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05 부일연립 2동 OOO호	3305.8/21521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05 부일연립 2동 OOO호	3305.8/21521				
							김OO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OO-OO	16529/215210				
							송OO	서울특별시 송파구 벽제고분로32길 607, 비OO호(삼전동)	495.87/21521				
							김OO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40, 931동 OOO호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95.87/21521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7, 109동 OOOO호 (삼산동, 엠코타운)	1157.03/21521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후정로 7, 109동 OOOO호 (삼산동, 엠코타운)	1157.03/21521				
							김OO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62, 310동 OOOO호 (은행동, 대우아파트)	495.87/21521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167번지	구분지상권설정	
88	서구	왕길동	산82-2	임	1,488.0	1,488.0	한OO	인천동구 송림동 228-1 삼익아파트 1-OOO	1323/1488				
							권OO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북길 279번길 O(용현동)	165/1488				
89	서구	왕길동	산83-1	임	11,116.0	9,961.0	홍OO	미합중국캘리포니아주 90026로스엔젤레스 사우스 위트머가 219 아파트 OOO	1/3	인천서구		압류	
							홍OO	남구 관교동 13-11 동부아파트 103동 OOOO호	1/3				
							우OO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387, 116동 OOOO호 (신현동, 신현이-편한세상 하늘채 아파트)	1/3				
90	서구	왕길동	산83-11	임	2,990.0	2,435.0	김OO	인천남동구 간석동 179-3 태화에스프리 OOO	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91	서구	왕길동	산83-19	임	4,950.0	4,950.0	윤OO	인천연수구 동춘동 925 한양1차아파트 106-OOOO	1/1				
92	서구	왕길동	산84	임	9,422.0	9,422.0	김OO	인천계양구 작전동 OOO	1/1				
93	서구	왕길동	산84-1	임	9,421.0	9,421.0	김OO	인천계양구 계산동 941 신도브래뉴아파트 107-OOOO	1/1	김OO	서울강서구염창동OO	근저당권설정	
94	서구	왕길동	산85-1	임	31,666.0	31,666.0	노OO	남국 간석동 OOO-31	5/10				
							김OO	가정동 314-14 하나 아파트 205동 OOO호	1/10				
							노OO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108동 OOOO호 (간석동,어울림마을아파트)	1/10				
							주식회사 OO메탈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티-OOOO호 (문정동, 가든파이브라이프)	1/10				
							이OO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바길 35-2, 5동 OOO호(신당동, 성지타운)	1/40				
							김OO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OO(수유동)	1/40				
							김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307동 OOO호 (이매동, 아름마을)	1/40				
							백OO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2, 104동 OOO호(왕길동, 유승아파트)	1/40				
							김OO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24, 513동 OOOO호 (당하동, 케이씨씨스위첸아파트)	1/20				
							손OO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08, 103동OOO호 (금곡동,검단우방아이유쉘)	1/20				
95	서구	왕길동	산85-2	임	3.0	3.0	국(산림청)		1/1				
96	서구	왕길동	산85-3	임	3,760.0	3,760.0	문OO	화성군 송산면 용포리 OOO	384/1548				
							문OO	서울 중구 수교동 OOO-2	384/1548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문OO	인천 북구 작전동 OOO	384/1548				
							이OO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OOO	3/387				
							김OO	경기도 시흥시 월곶중앙로70번길 11, 111-OOO	384/1548				
97	서구	왕길동	산85-8	임	219.0	219.0	인천광역시		1/10				
							인천광역시		5/10				
							인천광역시		1/10				
							노OO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 138, 108동 OOOO호 (간석동, 어울림마을아파트)	1/10	국	서인천세무서	압류	
							㈜OO메탈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타-OOOO(문정동,가든파이브라이프)	1/10				
							이OO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바길 35-2, 5동OOO호(신당동,성지타운)	1/40				
							김OO	서울특별시 강북구 덕릉로 OO(수유동)	1/40				
							김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30, 307동 OOO호(이매동,아름마을)	1/40				
							백OO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12, 104동 OOO호 (왕길동,유승아파트)	1/40				
98	서구	왕길동	산177-1	구	2.0	2.0	국(건설부)		1/1				
99	서구	마전동	616	전	225.0	225.0	김OO	인천서구 마전동 OOO-13	1/1				
100	서구	마전동	616-1	임	62.0	62.0	㈜OO가구	인천남동구 고잔동 OOO	1/1				
101	서구	마전동	616-6	도	46.0	46.0	인천시		1/1				
102	서구	마전동	628-3	도	11,166.0	8,533.0	인천시		1/1				
103	서구	마전동	628-4	도	6,647.0	6,359.0	인천시		1/1				
104	서구	마전동	629-22	전	7,116.0	7,116.0	이OO	인천서구 마전동 OOO-1	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05	서구	마전동	629-26	전	1,345.0	1,345.0	이OO	인천서구 마전동 OOO-1	1/1				
106	서구	마전동	산168-1	임	7,853.0	7,197.0	김OO	인천시부평구 부평동 OO-32	1/1	OO농업협동조합	부평구 갈산동396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정OO	부산북구화명동 OO	근저당권 설정	
107	서구	마전동	산168-2	임	1,423.0	1,349.0	이OO	인천남구 숭의동 OO-16	165/1423				
							박OO	인천시 남구 학익동 OOO	165/1423				
							이OO	인천시 북구 백석동 OOO	99/1423				
							김OO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OOOO-16	66/1423				
							최OO	인천직할시 남구 도화동 OOO-2	33/1423				
							송OO	부천시 남구 소사동 OOO-9	43/1423				
							박OO	인천직할시 북구 산곡동 OOO	50/1423				
							이OO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9 한양아파트2 동 OOOO호	33/1423				
							고OO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 OOO-28	40/1423				
							김OO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1491-3 연흥아파트 1동 OOO호	26.5/1423	OO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종로구연지동136-74	가압류	
										울산광역시 중구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인천남부지사	인천남구주안동 1446 건강보험빌딩	압류	
										인천광역시 남구		압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인천광역시		압류	
							황OO		99/1423				
							여OO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동 OOO-30	33/1423				
							인OO	인천직할시 남동구 장수동 OOO-27	53/1423				
							공OO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OOO-1	56/1423				
							윤OO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1동 OOO-4	33/1423				
							박OO		33/1423				
							김OO	인천직할시 서구 석남동 OOO-32	66/1423	국(남인천세무서)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압류	
							김OO	남구 용현동 617-3 영남아파트 에이-OOO	33/1423				
							최OO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OOO-44	33/1423				
							이OO	서울특별시 용산구 대사관로 34길 OO-16(한남동)	33/1423				
							김OO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2번길 OO, 비동301호(석남동,인성아파트)	165/1423	인천강화군		압류	정OO
							권OO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아길 5, 비OO호 (신당동, 중앙하이츠빌라)	65.5/1423				
108	서구	마전동	산168-3	임	1,983.0	1,983.0	김OO	인천 북구 산곡동 307 현대 아파트 104동 OOO호	1/9				
							김OO	인천 남구 주안동 OOO-2	1/9				
							이OO	인천 중구 도원동 24-OO	1/9				
							신OO	인천 남구 숭의동 2-OOO	1/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이OO	인천 북구 산곡동 307 현대 아파트 108동 OOOO호	1/9				
							진OO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34-1 어진마을 한화꿈에그린아파트 607-OOO	1/9				
							장OO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아로 163, 707-OOOO(논현동,에코메트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1/9				
							이OO	인천광역시 남구 장천로 OO(숭의동)	1/9				
							노OO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슬호 340,710동OOOO호(주엽동,문촌마을 7단지아파트)	1/36				
							노OO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23,3동 OOO호(심곡동,태영아파트)	2/36				
							노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60,502동 OOOO호(산곡동,현대아파트)	1/36				
109	서구	마전동	산168-4	임	3,570.0	3,570.0	이OO	인천동구 도원동 24-OO	595/7140				
							김OO	인천시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04동 OOO호	595/7140				
							이OO	인천직할시 북구 갈산동 OOO	595/7140				
							이OO	인천직할시 북구 갈산동 OOO	595/7140				
							신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54 중흥마을 603동 OOO호	595/7140				
							이OO	중구 송월동 1가 OO	59.5/3570	인천서구		압류	
										인천광역시		압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국	남인천세무서	압류	
							이OO	남구 주안동 OOO-5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국	남인천세무서	압류	
										인천남구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가압류	
										인천서구		압류	
							이OO	부평구 산곡동 산37-4 현대아파트 307동 OOOO호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이OO	남구 주안동 OOO-5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국	남인천세무서	압류	
										인천서구		압류	
										인천남동구		압류	
							이OO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67-3 주공아파트 117동 OOO호	59.5/3570	인천광역시		압류	
							장OO	인천광역시 남동구 에코중앙로 163, 707-OOOO(논현동,에코메트로한화꿈에근린아파트)	5/60				
							김OO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OOO-2	29452.5/32130				
							김OO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20동 OOO호	595/32130				
							김OO	인천 부평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18동 OOO호	595/3213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김OO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00, 303동 OOO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5/60				
							이OO	인천광역시 남구 장천로 OO(숭의동)	1/12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91, 213동 OOO호(산곡동,현대아파트)	595/32130				
							김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91, 213동 OOO호(산곡동,현대아파트)	892.5/32130				
							나OO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440번안길 19, OOO호(왕길동,왕길빌리지)	5/60				
							노OO	인천광역시 서구 대평로 23,3동 OOO호(심곡동,태영아파트)	90/2160				
							노OO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로 340, 710동 OOOO호(주엽동,문촌마을7단지아파트)	45/2160				
							노OO	인천광역시 부평구 안남로 260, 502동 OOOO호(산곡동,현대아파트)	45/2160				
110	서구	마전동	산168-5	임	327.0	327.0	최OO	인천시동구 송현동 OO-43	1/1				
111	서구	마전동	산168-6	임	1,454.0	1,454.0	최OO	인천시동구 송림동 OOO	1/1				
112	서구	마전동	산168-7	임	254.0	254.0	안OO	인천시남동구 간석동 OOO-19	1/1				
113	서구	마전동	산168-8	임	197.0	197.0	조OO	인천중구 신흥동 1가 OO-51	1/1				
114	서구	마전동	산168-9	임	1,164.0	1,164.0	석OO	인천연수구 선학동 350 금호아파트 1-OOO	1/1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15	서구	마전동	산168-10	임	202.0	202.0	최OO	인천동구 송현동 OO-43	1/1				
116	서구	마전동	산168-11	임	878.0	878.0	정OO	인천남구 주안동 OOO-3	217/878				
							장OO	인천직할시 중구 도원동 OO	99/878				
							어OO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OOO-2	165/878				
							신OO	인천직할시 남동구 간석동 OOO-12	66/878				
							김OO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OOO-11	33/878				
							이OO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OOOO	66/878				
							유OO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896-8 주공아파트 48동 OOO호	33/878				
							최OO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OOOO-1	33/878				
							염OO	인천직할시 동구 송현동 66-24 삼두아파트 6동 OOO호	33/878				
							구OO	인천직할시 북구 부평동 OOO-9	33/878				
							문OO	계양구 작전동 388-2 동보아파트 102동동 OOO호	34/878				
							최OO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OOO-5	33/878				
							가OO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93-OO	33/878				
117	서구	마전동	산168-12	임	194.0	194.0	심OO	인천북구 부평동 OOO-2	1/1				
118	서구	마전동	산168-13	임	324.0	324.0	김OO	인천중구 답동 OO	1/1				
119	서구	마전동	산168-14	임	194.0	194.0	최OO	인천남구 간석동 31-OOO	1/1				
120	서구	마전동	산168-15	임	331.0	331.0	김OO	인천직할시 중구 부평동 1가 21-OO					
							안OO	인천직할시 동구 송림동 O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김OO	인천직할시 동구 송림동 OOO					
							이OO	인천직할시 서구 석남동 575-30 유진연립 나동 OOO호					
							박OO	인천직할시 북구 신흥동 3가 7-OOO		인천남구		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강남구 강남대로450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마포구 독막로311 (인천남부지사)	압류	
							이OO	인천시 북구 산곡동 307 현대아파트 112동 OOO호					
							양OO	울산시 남구 선암동 679-3 한라전원아파트 103동 OOO호					
							공OO	인천직할시 남구 도화동 OOO-1		국	북인천세무서	압류	
										인천부평구		압류	
							이OO	인천직할시 남구 주안동 OOO-43					
							한OO	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천리 OOO					
							박OO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와동 OOO-6		국	인천세무서	압류	
										안산시		압류	
121	서구	마전동	산169	임	653.0	571.0	이OO	인천서구 완정로34번길 20, 109-OOOO	100/653	인천서구		압류	
							김OO	인천서구 완정로34번길 20, 101-OOOO	553/653				
122	서구	마전동	산170-4	임	6,674.0	6,674.0	전OO	인천시서구 당하동 당하지구44블럭1,2롯트 대주파크빌아파트 602-OOO	1/1				
123	서구	마전동	산170-8	임	9,811.0	9,811.0	우OO	속초시조양동 1501 부영아파트 504-OOO	1/3				
							우OO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0 벽산늘푸른아파트 102동 OOO호	1/3				
							우OO	인천 중구 신포동 OO-15	1/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24	서구	마전동	산170-13	임	3,241.0	3,241.0	남OO	인천북구 갈산동 363 태화아파트 2-OOO	1/2	인천광역시		압류	
										국(북인천세무서)		압류	
							김OO	서울특별시 강남고 개포로310, 26동 OOO호 (개포동, 주공아파트)	232.1/3241				
							조OO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23동 OOO호(대치동,은마아파트)	462.8/3241				
							이OO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57,601동 OOO호 (상암동, 상암월드컴파크6단지)	925.6/3241				
125	서구	당하동	943-17	임	13,995.0	13,995.0	OO산업㈜	서울강서구 당하동 OOO-14	1/1	OO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50 (인천원당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	
										한국전력공사	서울강남구 삼성동 167번지	구분지상권 설정	
126	서구	당하동	957-1	장	13,590.0	3.0	OO페인트㈜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OOO호	1/1	OO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가산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OO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120(세종로 금융센터)	근저당권 설정	
127	서구	당하동	957-2	임	210.0	1.0	OO페인트㈜	서울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9,OOO호	1/1	OO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79 (가산동지점)	근저당권 설정	
										OO은행 주식회사	서울 중구 통일로120(세종로 금융센터)	근저당권 설정	
128	서구	당하동	957-17	임	740	740.0	㈜씨OO엔피엘	서울강남구 언주로30길 13, OOOO호	1/1				
129	서구	당하동	957-20	임	20	20.0	㈜씨OO엔피엘	서울강남구 언주로30길 13, OOOO호	1/1				
130	서구	당하동	958-2	잡	16.0	16.0	㈜OO아이	인천서구 당하동 OOO-48, OOO-51	1/1	주식회사 OO은행	서울 중구 소공로51(검단신도시지점)	근저당권 설정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131	서구	당하동	962-5	임	933.0	896.0	김OO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 62, OOO-311	99/933				
							김OO	서울특별시 관안구 봉천로 21길 77, OOO호 (봉천동, 성원홈아파트)	99/933				
							김OO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백양로 8, 1708동 OOO호(화정동, 옥빛마을)	66/933				
							한OO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85, 209동 OOO호 (아동동, 신안실크밸리2차아파트)	66/933				
							김OO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로 6-OO(대조동)	205/933				
							한OO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월로 131번길OO (간석동)	233/933				
							권OO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66길 OO(상도동)	165/933				
132	서구	당하동	962-6	임	827.0	768.0	이OO	서울관악구 행운8길 O-O	1/1				
133	서구	당하동	산203-1	임	22,399.0	7,963.0	OOOO남양군파감찰공문중회	인천남구 주안동 OOO	1/1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설정	
134	서구	당하동	산203-3	임	160.0	160.0	한국OO공사	전남나주시 전력로 OO	1/1				
135	서구	당하동	산213-2	임	10,369.0	2,811.0	이OO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86,115-OOO	1/1				
136	서구	당하동	산213-6	임	1,901.0	880.0	정OO	인천서구 봉화로 60-17, 302-OOOO	100/1901				
							백OO	인천광역시 서구 사월로37번안길 OO(왕길동)	1801/1901				
137	서구	당하동	산213-12	임	4,012.0	225.0	박OO	인천계양구 장제로 1001번길 O	1/1			요역지 지역권	
138	서구	당하동	산218-1	임	919.0	670.0	이OO	인천남구 숭의동 30-O	1/1				
139	서구	당하동	산218-2	임	2,652.0	1,037.0	㈜OO	서울중구 퇴계로 OOO	1/1				
140	서구	당하동	산220	임	21,818.0	20,189.0	심OO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약로 56, 2201동 OOOO호 (상동,진달래마을)	1/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심OO	인천서구 청라캐낼로319번길 5,OOO	4959/21818				
							손OO	인천서구 청라캐낼로319번길 5,OOO	5950/21818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설정	
141	서구	당하동	산221	임	8,829.0	8,829.0	이OO	서울서초구 서초동 OOOO-60	1/1				
142	서구	당하동	산221-1	임	5,412.0	5,306.0	양OO	경기도의정부시 장암동 20 장암아파트 113-OOOO	1/1				
143	서구	당하동	산221-3	임	698.0	526.0	박OO	인천남구 만수동 OO	1/1				
144	서구	당하동	산221-5	임	3,115.0	3,115.0	이OO	서울서초구 서초동 OOOO-60	1/1				
145	서구	당하동	산225	임	8,865.0	8,865.0	㈜OO스엔피엘	서울강남구 언주로30길 13, OOOO	1/1				
146	서구	당하동	산226-1	임	16,377.0	16,377.0	유OO	경기도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26,311-OOO	60/42050				
							유OO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29길 69, 202동 OOO호 (압구정동,현대아파트)	20965/42050				
							김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26, 311동 OOOO호 (성복동,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60/42050				
							유OO	서울특별시 강남굴 압구정로29길69, 202동 OOO호 (압구정동,현대아파트)	20965/42050				
147	서구	당하동	산226-2	임	3.0	3.0	국(산림청)		1/1				
148	서구	당하동	산226-3	임	4648.0	243.0	유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 126, 311동OOOO호 (성복동,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60/42050				
							유OO	성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 69, 202동OOO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965/42050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구	동					성 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종류	
							김OO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2로126, 311동OOOO호 (성복동,성동마을엘지빌리지3차)	60/42050				
							유OO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29길69, 202동 OOO호(압구정동,현대아파트)	20965 /42050				
149	서구	당하동	산228	임	18,429.0	9,592.0	OOOO사과공파도화동종중	인천남구 도화동 OO-9	1/1				
150	서구	당하동	산228-1	임	960.0	960.0	오OO	경기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9, OOO	1/1				
151	서구	당하동	산228-2	임	96.0	96.0	오OO	경기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9, OOO	1/1				
152	서구	당하동	산228-3	임	2,028.0	2,028.0	한OO	인천서구 마전동 OOO-5					
							한OO	인천서구 마전동 OOO					
							한OO	인천서구 당하동 OOO-3					
							한OO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44 목동대원칸타빌3차아파트 301-OOOO	1/4				
153	서구	당하동	산228-4	임	999.0	999.0	한OO	서울양천구 목동 944 목동대원칸타빌3차아파트 301-OOOO	1/1				
154	서구	당하동	산230	임	2,641.0	346.0	정OO	아산군비방면 수철리 OOO	265/2657	인천서구		압류	
							최OO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OOO-2 4층	1196/2657				
							장OO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1, 313동 OOO호 (새류동, 엘에이치수월센트럴타운3단지)	1196/2657				
155	서구	당하동	산234-8	임	1,251.0	1,149.0	조OO	인천 연수구 해돋이로 107, 4-OOOO	9402/9620				
							한OO	서구 마전동 OOO	218/9620				
156	서구	백석동	산35-1	임	16,260.0	3,340.0	김OO	인천 서구 백석동 OO	1/1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구분지상권설정	

인천광역시공고 제2020-1141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을 공고합니다.

2020. 4. 29.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 변경사항

등록번호	단체명	대표자	변경사항(소재지)		주된 사업	비고
			전	**후**		
제2009-0-인천광역시-3호	인천청년경호봉사단	장문호	미추홀구 미추홀대로669번길 82 (도화동)	**미추홀구 인하로 195번길 36, 1층 (주안동)**	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활동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53호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그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제2019-303, 2019.10.7.)로 인천도호부청사 문화재의 명칭이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재를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 고시에 따라 조례명 및 각 조항별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변경(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나. 인천도호부관아의 관람료 징수 조항을 무료관람으로 변경(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1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문화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2) 연락처 : 032)440-4472, Fax : 032)440-8693

4. 참고사항

가.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라. 의견수렴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복원한”을 “재현한”으로 “인천도호부청사”를 “인천도호부관아”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도호부청사(이하 “도호부청사”라 한다)”를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도호부청사”을 “도호부관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7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8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 중 “도호부청사”를 각각 “도호부관아”로 한다.

제10조 중 “도호부청사”를 “도호부관아”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도호부청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관청이었던 “도호부”에 대한 역사적 의의와 정치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새로 복원한 “인천도호부청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재현한 “인천도호부관아”----------.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청사(이하 “도호부청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1.~ 4. (생 략)	제2조 (시설의 사용) 인천도호부관아(이하 “도호부관아”라 한다)----------. 1.~ 4. (현행과 같음)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청사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2. (생 략)	제3조 (관람시간) 도호부관아----------. ----------. 1.·2. (현행과 같음)
제4조 (관람 및 사용료) ①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관람하는 자에게 별표1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제4조(관람 및 사용료) ① 도호부관아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있다. ② 시장은 명절 등 특별한 날을 정하여 관람료를 면제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 (휴관) 도호부청사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제5조 (휴관) 도호부관아----------. 1.·2. (현행과 같음)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청사는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도호부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소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도호부관아----------.------ ----도호부관아----------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도호부청사 및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제7조 (시설물 등의 임의변경금지) ----------도호부관아 ---------- ----------.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도호부청사 및 그 부속물이나 전시물 등 관리를 위탁받은 재산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위탁받	제8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 ---------- 도호부관아 ---- ---------- ---------- ---------- ----------

현 행	개 정 안
은 재산의 손해보존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 (위탁관리의 취소) ------ ---------- ---------- ----------.
1. 도호부청사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시설을 변경하였을 때	1. 도호부관아---------- ----------
2. 도호부청사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2. 도호부관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도호부청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비의 보조) --- ---- 도호부관아----------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의 등록 등)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 제2조(시 지정문화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이하 “시 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시 문화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시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고시」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03호 □ 특·광역시 시립박물관 조례 운영현황(관람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자치법규) 등 발췌

□「문화재보호법」

○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의 등록 등**)

③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 기념물(제2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 **제2조**(시 지정문화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를 제2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이하 “시지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할 수 있다.

○ **제6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① 시장이 시 문화재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고시함과 동시에 해당 시 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문화재의 소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한다.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303호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내용 변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0. 7.

인 천 광 역 시 장

가. 고시내용

○ 지정내용 변경사항

연번	문화재의 명칭	수량	종별 및 지정번호	소재지	소유자 (관리주체)
1	인천도호부관아 (仁川都護府官衙)	2동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553 (문학초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교육감
2	부평도호부관아 (富平都護府官衙)	1동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사대로 20 (부평초등학교 내)	인천광역시 교육감

나. 지정내용 변경사유

○ '청사' 라는 명칭은 근·현대 관공서 건축물 문화재에 사용하고 있음

○ '관사' 라는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명칭으로 변경함

□ 특·광역시 시립박물관 조례 운영현황(관람료)

연번	조 례 명	주요내용
1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2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립박물관, 3개의 분관(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제5조(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3	부산광역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5조(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4	대구광역시시립박물관관리위탁조례	진열품의 관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함
5	대전시립박물관 조례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6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제6조 (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7	울산박물관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①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명칭변경(인천도호부청사 → 인천도호부관아)에 따른 안내판 및 홍보리플릿 등 제작비용 지출〕이 연평균 1억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문화재과장 백민숙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54호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작품수집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작품의 기증 활성화와 인천문화자산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장)

다. 작품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장 및 제4장)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문화콘텐츠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1810호, 전화: 032-458-7242, 팩스: 032-440-8721, 전자우편: jeong10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작품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품”이란 회화, 판화, 조각, 뉴미디어, 설치, 사진 등 예술적 표현물을 말한다
2. “수집”이란 작품을 구입, 경매구입, 기증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등의 방법으로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3. “기탁”이란 작품을 한시적으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결정) ①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이하 “본위원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작품가치평가위원회

2. 작품가격평가위원회

3. 작품수집심의위원회

② 본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본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복 위촉될 수 없다.

제4조(작품가치평가위원회) ① 작품가치평가위원회(이하 “가치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작품수집의 소장가치 평가 및 구입심의 대상작품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가치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가치평가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가치평가위원회는 수집제안작품목록(별지 제1호서식) 및 작품가치평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작품가격평가위원회) ① 작품가격평가위원회(이하 “가격평가위원회”라 한다)는 가치평가위원회가 선정한 작품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가격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의 외부가격전문가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매회 해당 가격평가위원회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④ 가격평가위원회는 작품가격 제안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작품수집심의위원회) ①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수집대상 작품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수집심의위원회는 3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으

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수집심의위원회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작품의 수집여부와 구입 시 가격을 결정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미술관 개관하는 날까지 비상임으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수집심의위원회는 수집심의결과목록(별지 제4호서식) 및 작품수집심의서(별지 제5호서식)를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품수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최초로 참석하는 회의 전까지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항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장 작품 수집 등

제10조(수집 대상) 수집 대상은 근·현대기의 국내·외 우수 작품으로서 예술적, 학술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작품으로 한다.

제11조(수집 절차) ① 작품의 수집은 구입, 경매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시장은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가치평가위원회와 가격평가위원회가 선정·평가한 작품을 대상으로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수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경매구입) ① 시장은 경매구입으로 작품을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수집 작품 제안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가치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가치평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에 시급히 응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응찰예정 작품에 대하여 응찰 여부와 최종 응찰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경매 후 처음 개최되는 수집심의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응찰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품을 경매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절차 중 가격평가위원회의 평가와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작품 기증)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와 연구 등에 필요한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기증하려는 자는 작품 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작품 기증서(별지 제9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증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증 작품 평가액의 100분의 20이내에서 기증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증 작품의 평가액은 수집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4조(작품 기탁) ① 작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작품 기증 등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기탁 수락 여부를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경우에는 기탁자에게 기탁작품 보관증(별지 제10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작품의 관리 등

제15조(작품관리관 지정 등) ① 시장은 수집한 작품과 기탁된 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품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작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관은 작품의 관리, 수리, 복원,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작품출납공무원은 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사무를 보좌한다.

제16조(작품의 관리) ① 관리관은 작품이 파손되거나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수시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관은 수집된 작품에 대하여 소장작품 관리카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관은 작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작품을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가입) 관리관은 작품의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수 집 제 안 작 품 목 록

번호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제작연도	규격(cm)	재료 및 기법	제안자	소장자 및 판매자	판매자 희망가격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작 품 가 치 평 가 서

목록번호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평 가 의 견						비 고
				독창성(10)	희소성(10)	시대성(10)	미술사적 가치(10)	완성도(10)	계(50)	

0000. 00. 00. 평가위원 0 0 0 (인)

[별지 제3호서식]

작 품 가 격 제 안 서

목록번호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판매자 희망가격	제안금액 (단위:천원)	의견	비 고

0000. 00. 00.

０００ 위원	０００ 위원	０００ 위원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수 집 심 의 결 과 목 록

목록번호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심의결과			의견	비 고
				가	부	구입가격		

0000. 00. 00.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작 품 수 집 심 의 서

목록번호	부문	작가명	작품제목	심의사항		비 고
				구입가격	수집여부	

0000.00.00. 심의위원 0 0 0 (인)

[별지 제6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실과 작품수집 평가·자문·심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작품수집 평가·자문·심의 관련 사전열람 및 검토한 자료의 복제, 타 용도 사용, 외부 정보유출 등을 하지 아니 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지겠습니다.

. . .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위원회

위원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1쪽)

수집 작품 제안서

<table>
<tr><td>부 문</td><td colspan="5">☐ 평면 ☐ 미디어
☐ 입체 ☐ 기타
☐ 부조

※ 부문 분류
☐ 평 면 : 작품표면 두께 10cm미만으로 한국화, 회화, 드로잉, 판화 등
☐ 입 체 : 조각, 설치, 공예 등
☐ 부 조 : 작품표면 두께 10cm 이상
☐ 미디어 : 사진, 영화, 영상 등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매체미술, 뉴미디어 등</td></tr>
<tr><td rowspan="4">작 가
(Artist)</td><td colspan="5">이 름 한글 한자
영문 호</td></tr>
<tr><td colspan="5">출생 연도 사망 연도 국적</td></tr>
<tr><td colspan="5">현 주 소</td></tr>
<tr><td colspan="5">연 락 처 E-mail</td></tr>
<tr><td>작 품 명</td><td colspan="5">한글 영문(원어)</td></tr>
<tr><td>제작년도</td><td colspan="5"></td></tr>
<tr><td>제작재료</td><td colspan="5">※최대한 자세하게 기록</td></tr>
<tr><td>소 장 자</td><td colspan="5">☐ 작가 ☐ 개인 ☐ 단체(기관)</td></tr>
<tr><td>작품규격</td><td colspan="5">평면: 세로×가로cm 에디션 /
입체: 높이×세로×가로cm, 무게 g</td></tr>
<tr><td>액자/좌대
포함규격</td><td colspan="5">평면: 세로×가로cm
입체: 높이×세로×가로cm, 무게 g</td></tr>
<tr><td rowspan="2">가 격</td><td>조사가격</td><td></td><td>소장자희망가격</td><td colspan="2"></td></tr>
<tr><td>산출근거</td><td></td><td>구매예정가격</td><td colspan="2"></td></tr>
<tr><td>부대비용</td><td colspan="2">운송비 부담 ☐ 미술관 ☐ 소장자</td><td>보험 부담 ☐ 미술관 ☐ 소장자</td><td>작품수복비
(예상)</td><td></td></tr>
</table>

위 작품을 경매 구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2쪽)

작품 세부내역 및 제안사유

작품상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수복이력	☐ 없음 ☐ 있음 일자 내용			
서 명 (signature)	내용				
	위치	작품전면 ☐좌 / ☐우 작품후면 ☐좌 / ☐우 ☐ 기타			
저작권자	이름(업체)		작가와 관계		
	연락처		E-mail		
	주소				

소장이력	번호	소장자	소장년도	※소장방법	주소 및 연락처
	1		~	가격:	주소: 전화:
	2		~	가격:	주소: 전화:
	3		~	가격:	주소: 전화:

전시 및 수상경력	일시 및 내용		

인쇄물 수록이력	저자명	서 적 명	출판사	발행년도	쪽수	출판지

제안사유	

❑ 작품사진

① 전면	
	비고
② 세부	
	비고

[별지 제8호서식]

작품 기증 등 신청서

(□ 기증 □ 기탁 □ 물품소관의 전환)

부 문	□ 평면 □ 입체 □ 부조	□ 미디어 □ 기타	
작 가 (Artist)	이 름 한글	한자	
	영문	호	
	출생 연도	사망 연도	국적
	현 주 소		
	연 락 처	E-mail	
작 품 명	한글	영문(원어)	
제작년도		기탁기간	
제작재료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		
작품규격	평면:	세로×가로cm 에디션 /	
	입체:	높이×세로×가로cm, 무게	g
액자/좌대 포함규격	평면:	세로×가로cm	
	입체:	높이×세로×가로cm, 무게	g
작품상태	□양호 □보통 □훼손 내용		
	수복이력	□없음 □있음 일자 내용	
서 명	내용		
	위치 작품전면 □ 좌/ □ 우 작품후면 □ 좌/ □ 우 □ 기타		
소장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전화	휴대폰	E-mail
가 격		산출근거	

위 작품을 기증 · 기탁 · 물품소관의 전환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명_____(인)

[별지 제9호서식]

작 품 기 증 서

기증번호 :

기증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 소			
기증작품	작 가		기증일자	
	제 목		크 기	
	기 법		제 작 년 도	
	작 품 사 진			

위 작품을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에 기증하였음을 확인드리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10호서식]

기 탁 작 품 보 관 증

기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E-mail		
	주 소					
	기탁기간	※ 정확하게 일자를 기재				
작품내역	작 가 명	작 품 명	규 격	제작년도	기 법	비 고

	작품명	저작권자	
		성 명	연락처
저작권			주소: Tel:
			주소: Tel:
			주소: Tel:
			주소: Tel:
			주소: Tel:

위 작품을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에 기탁하였음을 확인드리며, 지역문화 향유기회 확산에 적극 기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별지 제11호서식] (전 면)

소장작품(자료)관리카드

①작품번호			
②부 문			
③국 적			
④ 작가명	한글		
	한자		
	영문		
⑤ 명제	한글		
	한자		
	영문		
⑥제작년도			
⑦ 규격	평면	세로 x 가로 cm (사진 · 판화 /)	
	입체	높이 x 폭 x 깊이 cm	
⑧ 재료 및 기법			
⑨ 소장일시 및 가격		□ 구입 □ 기증 □ 관리전환 . . . 원 ($)	
※ 작품출처		※ 제안자	
※ 작품상태		□ 양호 □ 보통 □ 훼손 내용 : 수복이력 □ 무 □ 유 내용 :	
※ 에 디 션		※ 사인유무 및 위치	

(후 면)

※ 작품상태 확인내용

※ 비 고

확 인 자	출납담당 & 수집담당	(인)	보존담당	(인)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제8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기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전문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37호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시설”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다.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라.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마.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9조)

바.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2, 팩스 032-440-8764, 이메일 ysi331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근거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추진 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및 상시 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5.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다중이용시설 소유·관리자 및 설치·관리 소관부서 등은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 법령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사업(조례안 제 5조)

-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불법촬영 점검인력 운영 및 지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사업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계	**0**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불법촬영 점검 탐지장비 확보	-	-	-	-	-	0
불법촬영 예방홍보 및 교육	-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 탐지장비 2018년 기확보(인천시 11세트) → 추후 필요시 탐지장비 대여 검토

※ 불법촬영 점검인력 운영 : 인천시 일자리사업 연계방안 마련 → 별도 비용 미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시행시 비용발생이 예상되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4. 작성자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장 조 진 숙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38호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하여 신고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시민안전 보호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포상금 지급대상의 주민등록지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나. 위반행위 신고인을 불특정 다수로 확대함(안 제3조)

다. 신고의 보완요청 기일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함(안 제5조)

라. 포상금 지급 제외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7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lmalk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②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1) 화재수신반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 중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을 “누구든지”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 중 “3일”을 “5일”로 한다.

제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고 당시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 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신고인이 신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일 것	1.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신고일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가.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설치	4. 운수시설
	5. 숙박시설
	6. 위락시설
	②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

현 행	개 정 안
된 것으로 한정한다)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라. 운수시설 마. 숙박시설 바. 위락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에 관한 신고일 것.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정비를 위한 폐쇄·차단 행위는 제외한다. 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소화설비의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1) 화재수신반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1) 화재수신반 (2) 동력(감시)제어반 (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3)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거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을 하는 행위 다. 제2호 각 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다음의 행위 1)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을 하는 행위 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현 행	개 정 안
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3조(신고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위반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방법) 누구든지 ---------- ---------- ---------- ---------- ---------- ---------- ----------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 요청) ------ ---------- ---------- ---------- ------- 5일 ---------- ---------- ---------- ---------- -----.

현 행	개 정 안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고 당시 위반행위를 조사 중인 경우	2. 신고 당시 위반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2014. 11. 19., 2015. 1. 20., 2016. 1. 27., 2017. 7. 26.>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의3(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누구든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 공동주택
   가.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
   나.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에서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교육기본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2. 근린생활시설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棋院),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단란주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제외한다)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 및 안마원(「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를 포함한다)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관광진흥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대상이 되는 물놀이형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바.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것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 수리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만 해당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독서실,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같은 건축물

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을 말한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미만인 것

타. 삭제 <2013.1.9>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가목의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5.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전통시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며, 노점형시장은 제외한다)

라. 상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것

2) 제2호자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가. 학교
1)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의 교사(校舍)(교실 · 도서실 등 교수 · 학습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하되,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체육관,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른 급식시설, 합숙소(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 등이 집단으로 숙식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교사 및 합숙소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 · 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9. 노유자시설
가. 노인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주 · 야간보호서비스나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아동 관련 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제8호가목1)에 따른 학교의 교사 중 병설유치원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장애인 관련 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장애인 심부름센터, 한국수어통역센터,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등 장애인이 직접 그 시설 자체를 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정신요양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및 쪽방삼당소만 해당한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환자 또는 한센인 요양시설 등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않는 것

10. 수련시설

가. 생활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특화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자연권 수련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가.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다. 운동장: 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등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것

12.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일반업무시설: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의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라.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마.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
마. 카지노영업소
15.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
나. 가스시설: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가스 제조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 저장시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 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 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 검사장
  바. 자동차 매매장
  사. 자동차 정비공장
  아. 운전학원·정비학원
  자. 다음의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내부(「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필로티와 건축물 지하를 포함한다)에 설치된 주차장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50세대 미만인 연립주택 또는 50세대 미만인 다세대주택
  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가. 축사[부화장(孵化場)을 포함한다]
  나. 가축시설: 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管理舍),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도축장
  라. 도계장
  마. 작물 재배사(栽培舍)
  바. 종묘배양시설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은 제외한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가. 하수 등 처리시설
  나. 고물상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라. 폐기물처분시설
  마.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가.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나.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
다. 치료감호시설
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마. 「출입국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
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에 따른 유치장
사. 국방 · 군사시설(「국방 · 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22. 방송통신시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 · 수신 · 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포함한다)
24. 묘지 관련 시설
가. 화장시설
나. 봉안당(제4호나목의 봉안당은 제외한다)
다.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라.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 및 동물 전용의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다. 어린이회관
라. 관망탑
마. 휴게소
바.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가.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나.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차량(궤도차량용은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하, 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만든 것

28. 지하구

가. 전력 · 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 · 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 인공구조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m 이상)인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

29.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가.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1)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2) 「주택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주택 안에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3)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또는 위생을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또는 주차를 위한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다) 구내식당, 구내세탁소, 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기숙사는 제외한다) 또는 구내소각시설의 용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

나. 하나의 건축물이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와 주택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것

비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 환기 · 통풍 ·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갑종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 ·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그 윗부분에 드렌처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시장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예산운영 현황

구분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예산액	22,150,000	4,400,000	4,500,000	4,750,000	4,750,000	3,750,000
집행액	7,500,000	2,950,000	2,900,000	1,000,000	650,000	운영중
잔 액	10,900,000	1,450,000	1,600,000	3,750,000	4,100,000	운영중

- 기존에 신고포상금 예산이 해마다 책정되어 왔으며, 그 예산액에 유의미한 금액의 변동이 없음. 또한「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1억원미만의 예산액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박성석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39호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4조)

○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교육내용, 교육 강사의 자격, 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및 수료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 협력체계 구축,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사후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0조 ~ 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 이메일 dalmalk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및 응급상황 등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안전”이란 화재예방 및 대피, 그 밖의 생활 속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
2.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 대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기본방향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
3. 교육인원 편성 및 시설, 장비 등에 대한 교육지침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연령별·대상별 특성과 취약계층을 동반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방법, 대상자 선정, 강사 배치 등 교육실시에 필

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내용 등) 제5조에 따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교육 강사의 자격) 제5조에 따라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소방안전교육장 운영 등) ① 시장은 시민에게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체험시설을 갖춘 상설 소방안전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설교육장의 면적과 시설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교육을 받으려는 시민의 편의와 교통사정 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원활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를 위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수료증 발급 및 유효기간)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군·구,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시행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교육인력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

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사후관리) 시장은 해당 연도의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과 관련된 사항을 신문, 방송, SNS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의 내용·방법 및 시간(제6조 관련)

교육 내용	교육 방법	교육 시간
1. 화재예방 및 대피(행동) 방법 2. 화재 초기 진압에 필요한 소화설비 사용법 3. 그 밖에 소방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론 및 실습	1시간
1. 응급처치 활동의 원칙 및 내용 2. 응급처치 시의 안전수칙 3. 응급의료 관련 법령 4. 기본응급처치요령	이론	1시간
1. 기본응급처치요령 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실습	2시간

비고

1. 시장은 교육대상별로 각 응급처치 교육 내용의 범위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시장은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교육의 내용을 수료증에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2]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강사의 자격(제7조 관련)

1. 소방안전교육 강사

가. 강사

1) 소방 관련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구조사, 인명구조사, 화재대응능력 등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활동 관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보조강사

1) 가목에 따른 강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보조강사의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응급처치교육 강사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구급대원

라. 응급의료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거나 소방기관에서 응급처치 전문교수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마. 「소방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별지 서식]

제0000-0000호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 수료증

소 속 :

성 명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유효기간 :

위 사람은 인천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 교육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을 드립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장 직인

91㎜×128㎜

(인쇄용지(특지) 120g/㎡)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가. <생 략>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2017.7.26>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및 테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119구조·구급의 효율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구조·구급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19구조·구급(이하 "구조·구급"이라 한다)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구조·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조·구급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의 구축 및 구조·구급장비의 구비, 그 밖에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위급상황에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 28.>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의3.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 비용 발생 요인 없음

(사유) 현재 관련 법령에 의거 각 소방서별로 소방안전 및 응급처치교육을 상시 시행중에 있으며 교육추진 시 소방서별 자체 예산을 활용함으로써 추가 소요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소방서별 소방안전교육 업무추진 관련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소계	중부	남동	부평	서부	공단	계양	미추홀	강화	영종	송도
예산	45,767	3,050	20,100	2,550	3,050	3,050	2,550	2,530	2,550	3,787	2,550

4. 작성자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박성석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41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 비상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매입대상에서 제외함.(안 별표 1)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할 수 있도록 매입면제 대상을 개정함.(안 별표 2)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팩스 032-440-8763, 이메일 obw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2-440-6212)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 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제2항 관련)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4/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 과표의 5/100 (단,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4/100)	
③ 단,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	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1인승 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① 1,5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3/100	
② 2,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5/100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이상	취득세과표의 1.5/100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비 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포함)·구거부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점·사용료부과액의 5/100 (점·사용 기간이 1년이상의 장기허가시는 최초 점·사용료 징수시에만 점·사용료 부과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함)	
나. 토지형질 변경허가 ① 농지 (전 ·답) ② 산·임야, 잡종지등 기타지목	 ㎡당 1,500원 ㎡당 3,000원	
다. 골프장 등록	㎡당 60원	
4. 건설공사도급계약(「건설산업 기본법」), 용역계약, 물품 구매·수리·제조계약 (자치단체가 전액출자·출연법인의 계약 체결 포함)	대금청구 금액의 2/100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여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1. 매입면제 기관	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달청을 경유한 계약으로 대금을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과 외국정부 기관 라. 주한 국제 기구와 원조 단체 마.「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시설 바. 민·상법외의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만을 면제한다. 사.「정당법」에 따른 정당 아.「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	
2. 매입면제 대상	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를 자기명의로 하는 자동차 이전 등록 나.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말소등록 당시의 소유자가 회수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의 자동차 신규 등록 다. 법인 합병 시의 자동차 이전등록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가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1대의 차량 등록(장애인 1인1대에 한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 중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 (2)「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3)「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마. 각종 허가증 o 농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점용·사용허가 o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농어가 주택건설과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허가. 다만, 농업인·어업인과 농림어업의「농어업·농어촌 및식품산업기본법」제3조가 정한 바에 따름. 바. 일반운영비 또는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사.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 아. 개별 법령 및 조례의 위탁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무 자.「환경친화적 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가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매입하여야 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금액 전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하되, 감면 시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구 분	매입 면제대상과 내용	비 고
	차.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 요인에 의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선박・자동차 및 기계장비 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개수・건조・수선하는 경우와 대체 취득하는 경우의 등록, 인・허가(「지방세법」 제108조에 한함) 및 자동차의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반납한 자동차 등과 동일한 자동차 등으로 교환 받는 자동차의 등록(「지방세법」 제268조에 적용대상에 한함)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채 매입 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8조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리스차량 전담창구를 통해 등록하는 자동차 이전등록 타.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19조(지방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경상적(經常的)인 운전자금(運轉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회전기금(回轉基金)의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건설비 또는 개량비에 충당하거나 유사사업의 매수 자금으로 필요한 경우

②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거나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조례로 정하는 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허가·인가를 받는 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出捐)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출연한 법인과 용역계약 또는 물품 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

④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절차, 매입 대상별 금액, 채권등록 방법, 이율 및 상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 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관련 조문

1) 안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제2항 관련)

-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을 2020년12월31일까지는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2021년1월1일부터는 계약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

2) 안 별표 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2019년 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기준 (안 별표 1)

2) 조례개정 후 2020. 12. 31.까지 7개월 기준 (안 별표 1, 별표2)

3) 2020년 1분기 코로나19관련 물품구매 시 지역개발채권 매입액 기준 (안 별표 2)

나. 추계 결과(지역개발채권 매입금액)

단위 : 천원

구분	시행전	시행후	증감
계	21,931,346	17,180,467	△4,750,879
안 별표1	21,144,334	17,180,467	△3,963,867
안 별표2	787,012	0	△ 787,012

1) 안 별표1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제2항 관련)

-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의 지역 개발채권 매입기준을 2020년12월31일까지는 계약금액이200만원에서 4,0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상향 조정할 경우
- 3,963,869천원(월566,267천원×7개월)의 지역개발채권 매출 수입이 감소됨.

2) 안 별표2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대상(제10조 관련)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의 경우, 각종 재난 발생 등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을 면제해 주는 사항에 대한 비용을 추계할 수 없음.
- 향후 조례개정 후 본 조항에 의거 내부방침으로 ‘20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관련 물품구매 시 채권매입면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이 경우 787,010천원(월112,430천원)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이 감소됨.

다. 재원조달방안

1) 지역개발기금 수입감소분 4,750,879천원(안 별표1 +안 별표2) 은 2020년도 지역개발기금 예비비*로 충당할 예정임.

* 2020년말 기준 지역개발기금 예비비 : 18,456,369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김상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지역개발 기금 수입	△4,750,879	0	0	0	0	△4,750,879
	소계	△4,750,879	0	0	0	0	△4,750,879
세출	-		해	당	없	음	
	소계						
재원 조달		4,750,879	0	0	0	0	4,750,879
국 비			해	당	없	음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43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여 웰다잉(Well-dying)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24, 팩스 032-440-8764, 이메일 silkna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붙임1)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와 같이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2. “웰다잉(Well-dying) 문화”(이하 “웰다잉 문화”라 한다)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 시장은 호스피스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및 지원체계 구축

2. 호스피스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지원

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연구·개발

5. 호스피스 및 웰다잉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시장은 호스피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 사업

2.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지원 사업

3.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원 사업

4. 관계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사업

5.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구,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 법령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18. 3. 27.>
   나. 삭제 <2018. 3. 27.>
   다. 삭제 <2018. 3. 27.>
   라. 삭제 <2018. 3. 27.>
   마. 삭제 <2018. 3. 27.>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가. 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라. 만성 간경화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사회적·문화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2. 의료기관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② 등록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관한 업무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 및 작성 지원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정보제공 및 홍보

4. 관리기관에 대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등록·변경·철회 등의 결과 통보

5. 그 밖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등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의 결과를 기록·보관하고, 관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기관의 업무를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록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려는 등록기관의 장이 휴업 예정일 전일까지 관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직접 보관할 수 있다.

⑦ 등록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 결과 기록·보관 및 보고, 폐업 등의 신고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역별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권역별호스피스센터(이하 "권역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 의료기관을 우선하여 지정한다.

1. 말기환자의 현황 및 진단·치료·관리 등에 관한 연구

2.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의 지원
3.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전문기관들에 관한 의료 지원 및 평가
4. 호스피스대상환자의 호스피스 제공
5.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사업에 관련된 교육·훈련 및 지원 업무
6. 해당 권역의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7. 말기환자 등록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8. 그 밖에 말기환자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역별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방법·절차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대상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호스피스전문기관(이하 "호스피스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호스피스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안 제4조(사업의 추진)
  ○ 안 제5조(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 제정에 따라 사업추진 및 지원에 비용이 수반되나 연간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 조례안 제4조(사업의 추진) 제3호, 제5호에 근거,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인식개선 사업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교육·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 44,000천원
    - 조례안 제5조(지원) 제1항 제4호에 근거, 기관 간의 협력 및 연계 사업을 위한 간담회 등 일반운영비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대상 : 시, 보건소, 권역별호스피스센터 등
      · 개최횟수 : 분기별 1회
      · 간담회 등 일반운영비 : 1,000천원

(단위:천원)

사업명	합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총계	167,000	45,000	41,000	31,000	25,000	25,000
홍보비 및 홍보물 제작 등	162,000	44,000	40,000	30,000	24,000	24,000
간담회 등 일반운영비	5,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작성자 :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장 이각균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50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시 서북부지역(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의 악취배출 중소기업의 악취저감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여 시민들의 악취로 인한 불편 해소

○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을 조성하여 악취개선 사업을 위해 서북부지역 기금 계정을 추가하여 시민건강 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변경

나. 조례의 목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다. 기금의 존속기한, 회계관리, 조성, 용도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마.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5, 팩스 440 -8765, 이메일 iamngy@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의 악취관리를 위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이 출연한 자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이자
3.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및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을 위한 융자

2. 그 밖에 악취관리 및 악취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 다음 재원은 각 호의 지역에 한하여 사용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출연금 : 남동구 전역

2.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수도권매립지의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군·구 악취업무 담당국장

2. 기금 관련 전문가

3. 악취방지 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장이 된다.

⑤ 시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융자사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근거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의 악취관리 사업에 대해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융자사업 대상은「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③ 융자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악취방지법 제3조
  - 인천광역시 남동산업단지 및 주변지역 악취방지시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비용 발생 요인
  -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의 악취개선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 지원
  - 연간 25억원 (무이자, 2년거치 5년 분할상황) 융자
  - 사업장 당 최대 3억원 이내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도권매립지 영향이 우려되는 서구 일원 및 계양구 드림로 주변으로 악취방지법 제8조의 악취배출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대해 악취저감 비용 융자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수입	30,000,000	0	500,000	500,000	500,000
지출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2,50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전입금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 환경국 대기보전과장 조현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서북부지역 악취관리 전입금	30,000					30,000
	서북부지역 악취관리 융자 분할상환금			500	500	500	1,500
	소계	30,000		500	500	500	31,500
세출	서북부지역 악취관리 융자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소계	2,500	2,500	2,500	2,500	2,500	12,500
재원 조달		30,000					
국 비							
시비	소 계	30,000					
	일반회계						
	특별회계	30,000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51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지역제한을 해소하고, 목적사업을 구체화함으로써 위탁 사업 추진 근거와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하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신설된 제2조 제9호의 스마트혁신 사업과 제10호의 스마트실증사업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인「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용어 변경(안 제1조)

나. 회사의 사업범위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역 내”의 지역 제한을 해소함(안 제4조제1호)

다. 회사의 목적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증진코자 핵심 사업분야를 추가함(안 제4조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라. 국내와 해외 사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제4호와 제5호를 하나의 조문으로 병합(안 제4조제9호)

마. 사업의 위탁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 확대 (안 제4조제13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3, 팩스 032)440-8765, 이메일 sp08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스마트시티”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 컨설팅·설계·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관광·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에너지·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스마트도시 ---------- ---------- ---------- ---------- ---------- ---------- ---------- ----------.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역 내 스마트시티 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3.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4. 민간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제공 5. 해외 스마트도시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설계, 구축, 운영 6. 시설경비업 7. 근로자파견업 8. 건물(시설)관리용역업 9.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적인 사업 일체	제4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마트도시 컨설팅·설계·구축 및 운영 사업 대행 2. 스마트 산업단지 서비스 3. 스마트 교통·관광·미디어 서비스 4. 스마트 빌딩·에너지·지능형 도시기반시설 서비스 5. 스마트 혁신사업 · 실증사업 6. 도시재생 스마트 서비스 7. 도시개발사업 정보통신기술(ICT)설계, 구축, 운영 8. 스마트 도시정보사업 9. 국내외 스마트도시서비스 개발 및 판매 10. 시설경비업 11. 근로자파견업 12. 건물(시설)관리용역업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그 밖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 및 위 각호와 관련된 부대적인 사업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1의2. "국가시범도시"란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제35조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2. "스마트도시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교통·복지·환경·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화된 시설 나.「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다.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한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집, 가공 또는 제공을 위한 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스마트도시기술"이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5.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6.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에 따라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6의2.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이란 국가시범도시에서 시행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말한다. 7. "스마트도시산업"이란 스마트도시기술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스마트도시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8. "혁신성장진흥구역"이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융·복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스마트도시산업의 창업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스마트혁신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제공·이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0. "스마트실증사업"이란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11. "스마트규제혁신지구"란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4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2. "스마트혁신기술·서비스"란 스마트도시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신기술·신서비스의 활용 또는 융·복합을 통해 도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혁신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말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관련자료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스마트시티과장 고 철 원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52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 월 28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이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장치 착용과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하여 사람들이 개의 위협으로부터 안전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관리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동물의 사육 및 관리 시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이 동물을 동반하고 주택 및 공공장소 등으로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 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동물의 사육 및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안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조의2(동물의 사육 및 관리)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의 준수사항 가. 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수 있는 비닐봉지, 장갑 등을 휴대하여 동물이 배설할 경우 배설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나. 동반하는 동물이 주변의 행인이나 다른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외출할 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을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안감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하여야 한다. 2. 주택 및 공공장소에서의 준수사항 가. 사육·관리하는 동물이 주택의 울타리 밖으로 주

	인 없이 나돌아 다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이 장애인과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및 기생충 발생, 털 날림 등으로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 제13조제2항 및 제3항(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12조(안전조치) □ 「가축전염병 예방법」 ○ 제2조(정의) ○ 제15조제1항제1호(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 「장애인복지법」 ○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연락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③ 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등록대상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

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3. 2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12. 31., 2020. 2. 4.>

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

(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 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鰡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3. "검역시행장"이란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4. "면역요법"이란 특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목적으로 농장의 가축으로부터 채취한 혈액, 장기(臟器), 똥 등을 가공하여 그 농장의 가축에 투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병성감정"(病性鑑定)이란 죽은 가축이나 질병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하여 임상검사, 병리검사, 혈청검사 등의 방법으로 가축전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특정위험물질"이란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나.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7.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란 전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전파시킬 우려가 큰 매개체 중 야생조류 또는 야생멧돼지와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하거나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위한 방제를 하는 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4. 12.]

제15조(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2.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주사·면역요법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이하 "주사·면역표시"라 한다)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가축의 소유자등의 청구를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 주사, 주사·면역표시, 약물목욕, 면역요법 또는 투약을 한 사실의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보조견의 훈련·보급을 위하여 전문훈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⑤보조견표지의 발급대상, 발급절차 및 전문훈련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추가적인 예산의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농축산유통과 한 태 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0 - 53호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 월 28 일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 중심의 벤처기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중소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금융·기술·입지 등 벤처기업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산업의 구조 조정을 원활히 하고 제2의 벤처 붐에 대응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벤처기업 육성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함(안 제3조)

다. 신산업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술, 경영, 판로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라. 벤처기업 지원시설, 집적시설 지정, 육성촉진지구 지정 등 지원 근거 마련함(안 제7조 ~ 제8조)

마. 소셜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안 제9조)

바. 자금지원 및 출자 투자 유치 등의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 제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 5. 7.(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2, 팩스 032)440-8765, 이메일 cafesook@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 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인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4.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4조의3제1항의 각 호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

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제2장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벤처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벤처기업 육성 기반의 구축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운영

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

4. 법률·금융·고용·특허 등 상담과 지원

5. 수출·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

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셜벤처기업의 지원) 시장은 소셜벤처기업의 육성과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6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2.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출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장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 및 투자

제11조(융자) 시장은 벤처기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2조(출연) 시장은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는 공공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투자운영) ① 출연기관 등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운영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에 투자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투자 결과를 제3조의 육성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6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조제1항(정의) ○ 제4조제1항(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 제4조의3제1항(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 제20조제1항(조합의 결성 등)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 법규 정비 대상	“해당 사항 없음”
특이 사항	“없 음”

관계법령 발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제2조제1항(정의)** ①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②~⑨ 생략

ㅇ **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 2. 11.>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기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만을 말한다)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다음 각각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3)의 요건만 적용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이 보증(보증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개발기술의 사업화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담보로 자금을 대출(대출가능금액의 결정을 포함한다)할 것

(2) (1)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과 그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3) (1)의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3)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4조제1항(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⑤ 생략

ㅇ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6. 5. 29., 2017. 7. 26.>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8조의4 및 제26조에서 같다)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제18조의4(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구역의 일정지역에 대하여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촉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육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및 절차와 촉진지구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제19조의2(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등)** ①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여야 한다. 액셀러레이터가 등록한 사항 중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액셀러레이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연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비영리법인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에 출자한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이 경우 조합등은 해당 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명백하도록 「법인세법」 제113조에 따라 조합등 내 다른 사업과 각각 별개의 회계로 기록하여야 한다.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나.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3과 제19조의4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과 시설을 보유할 것

ㅇ **제20조제1항(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그 외의 자가 출자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회사

□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ㅇ **제13조(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 ① 진흥계획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

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3. 제23조에 따른 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4. 제35조에 따른 발명의 시유특허 출원 여부

5. 제37조제2호에 따른 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지식재산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어 올해 별도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 향후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예산편성 시기에 절차에 따라 또는 시의회에 별도로 보고 추진하겠음.

4. 작성자 : 일자리경제본부 산업진흥과장 이남주

기 타

인천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20-138호

인천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및 등록 기준 고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및 등록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0. 4. 28.

인천광역시교육감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시설·설비 기준 및 등록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설비 기준) ①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이하 “발달장애인”이라 한다)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제1호(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지하실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별표1, 별표2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 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등록신청) ①「평생교육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칙
2. 교육과정 편성표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4. 시설·설비 현황표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6. 위치도
7. 시설배치도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0.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1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2.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② 제1항 등록신청서의 첨부 서류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서류와 중복될 경우 하나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부 칙(2018. 6. 11,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18-105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4. 28,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0-138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시설·설비 기준

유형	구분	세부 기준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 학습 시설·설비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실당 일시수용 학습자 10명 이하) 나. 관리실 1실 이상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라. 보건실(권장) 마. 그 외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해당시설의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제1호(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 학습 시설·설비	가. 수업실 1실 이상(실당 기준면적 49.5제곱미터 이상) 나. 관리실 1실 이상 다. 도서 및 자료 500권 이상을 갖춘 자료실 라. 보건실(권장) 마. 그 외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 해당시설의 총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의 편의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3호에 따라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명칭
	유형 [ ] 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 ] 2. 제1호(발달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려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목적
	위치
	교육과정 편성 ※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로 갈음함
	시설·설비 ※ 시설·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시설·설비 및 등록 기준 고시 제3조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교육과정 편성표 1부 3.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에 관한 내역서 1부 4. 시설·설비 현황표 1부 5.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6. 위치도 1부 7. 시설배치도 1부 8.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9.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12. 장애인편의시설 현황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대신해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신분증 확인으로 갈음합니다)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3. 건축물대장 등본 4. 토지대장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분증 확인으로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동의할 필요가 없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확인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등록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청인 처리기관: 시·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